kotra 자료 15-087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kotra

kotra 자료 15-087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kotra

발 간 사

존경하는 한인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한인동포 여러분

우선,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과 법률, 시장환경으로 인해 신발, 봉제, 전자, 가발,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있는 한인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가 2010년에 출간된 후 약 5년만에 다시금 그 내용을 한층 보완하여 발간되었으며,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한인기업인의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책자가 한인 기업인들과 한인 동포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 창 근

발 간 사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2,200개사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봉제, 섬유, 신발 등 제조분야는 물론 건설, 정보통신, 금융,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100만 명에 가까운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약 50억 달러의 수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지난 2015년 3분기까지의 투자건수는 1,529건으로 전년 대비 45% 정도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장개척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기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무역부진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인프라 부족, 노동 환경 악화, 복잡한 현지 정책 등이 우리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OTRA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우리 진출 기업의 사업 환경 상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출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투자관련 이슈들을 모으고,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니어로도 번역되어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공식적인 건의사항으로 전달 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의 발간이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를 계획하는 우리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2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김 병 삼**

축 사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의 발행을 축하합니다.

지난 50여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 기업들은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한때 300억불을 넘던 교역규모가 170억불로 축소되고 투자규모 또한 한창 때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양국간 경제교류가 다소 침체되어 보이는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외부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약한 인프라, 느린 행정절차, 관료주의, 점점 강화되는 외국인 노동정책, 보호주의적 환경 등 인도네시아 내부적 요인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책을 돌아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애로 및 인도네시아 정부에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건의사항이 인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경영 및 투자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 발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코트라와 코참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2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조 태 영**

목 차

I. 개 요 13

1. 경제 동향 14

2. 최근 경제정책 18

가. 1차 – 8차 Economic Package
나. TPP & RCEP
다. AEC 와 인도네시아

3. 한국기업 동향 27

II. 분야별 주요정책 33

1. 무역 정책 34

가. SNI 인증제도
나. 라벨 규정 강화
다. 제 3국 invoicing 제한적 허용
라. 중고 자본재 수입허가
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바.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법
사. 인도네시아 국산부품 사용
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강화
자. 회사 폴더 등록제
차. 투자승인 요청 온라인 접수
카. 투자이행보고 (LKPM) 의무화
타. 신규투자 관세 감면

2. 수출입 / 통관 정책 45

가. 수입 허가 체계
나. 특수 수입자 번호 폐지
다. 통관항구 제한 신선 농산물
라. 보세구역 하청제한, 위치제한
마. Profiling 제도등 보세지역 진입 제한
바. 선적전 검사
사. 수입 및 특정산업 선납 법인세 (PPH22) 규정 변경
아. Form AK, Form E 심사 강화
자. 밀수 단속
차. ATA Carnet

3. 조세 정책 50

가. 원천세
나. Sunset Policy –자진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제도
다. Tax Incentive – 투자세액 공제제도
라. 전자세금계산서
마. 부채 자본비율 – Debt to Equity Ratio (DER)
바. 수출업체에 Tax Incentive 부여
사.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정방향
아.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추세

4. 노동 정책 59

가. 근로 연령 제한
나. IUT (영구사업허가제) 법인의 RPTKA 진행 제한
다. 외국인 근무지역 / 범위 제한
라. 노동부 근로허가서 진행 구비조건
마. Wajib Lapor (인력사용보고서) 의무화
바. 2015년 1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5. VISA 정책 61

가. VISA 온라인 등록제
나. MERP 의무화, KITAS 임시 연장 불가
다. 신규 KITAS 진행시 근무지 및 거주지 실사
라. Domisili 요구
마. 현지법인 형태별 외국인 채용 제한

III.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 63

1. 투자 환경 64

가. 경제블록화와 인도네시아
나. 네거티브 리스트
다. 인프라
  A. 도로/교량
  B. 철도
  C. 항구
  D. 공항
  E. 전력
  F. 수처리/위생
  G. 개선요청
라.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절차
마. 중앙 / 지방정부 간 정책 일치성 보장
바. 중앙정부의 중재 역할 중요
사. 외국인 입찰 참여의 제한

2. 노동 분야 82

가. 해고에 따르는 각종 보상제도의 문제점
나.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다. 낮은 노동생산성 및 숙련도
라. 잦은 노동 파업
마. 고급 인력 양성 및 고용불안 해결 시급
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사. 최근 노동부 장관령 개정
아. BPJS 전면 시행
자. KITAS – IMTA 프로세스 지연

3. 부동산 / 소유권 분야 96

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
나. 토지소유법의 단순화
다. 산림 Moratorium

4. 금융 분야 99

가. 경직된 융자 서비스
나. 높은 대출이자
다. 인프라 펀드의 미비
라. 인도네시아 내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5. 조세 분야 106

가. 월 선납 법인세(PPH 25) 납부의 문제
나. 과다 납부세액 환급
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6. 수출입 / 통관 108

가. 수출세 부과및 과도한 샘플 통관 비용
나.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및 인증강화 요구
다. 세관행정
라. Tanjung Priok 항구 물류개선
마. 터미널 교통 정체
바. 선박 정박 시간 개선
사. 인도네시아 국가인증 (SNI) 일괄 적용
아.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 지정
자. 특별 수입 허가 쿼터제
차. 긴 수출입 처리 시간
카. 보세지역 (KB) 관련 현안
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 및 판매 제한

Ⅰ 개 요

1. 경제 동향
2. 최근 경제정책
3. 한국기업 동향

1.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2015년 현재 2억 5천 5백만 인구에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이다.
2014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제규모로 세계 16위, G20 회원국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피치, R & I 로부터 " 투자적합 "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아세안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시장으로, 아세안의 40% 인구 및 38%의 경제규모를 점하고 있다. (IMF, 2014)

금융, 원유, 가스분야를 제외한 2010 – 2015년 외국인투자액 누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약 75억 달러로, 싱가폴 (270억 달러), 일본 (133억 달러), 미국 (77억 달러) 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다.

2014년 일본 국제협력 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urvey – 201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도네시아가 해외사업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긍정적 요인으로는 지역상권의 성장가능성, 내수시장의 크기, 저임금 노동력, 다양한 기술자의 공급기지 및 제3국 으로의 수출기지 역할을 꼽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불분명한 법과 제도, 타 기업과의 경쟁, 낙후된 인프라 시설 및 숙련 관리직 확보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산업별 긍정요인을 알아보면, 서비스 산업에서 2030년 세계 7대 경제규모로 약 1조 3천억원 (U$1.8 trillion) 의 시장규모가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의 잠재력도 빼놓을 수 없다. 2013년 기준 7천 4백 60만명의 인터넷 사용자, 2012 – 201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Twitter 사용자 44%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3년 기준 전세계 facebook 사용 4위 국가이다. (1위 미국, 2위 인도, 3위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각종 원자재의 주요 생산지로서 Crude Palm Oil (2천 700만톤, 2013년 기준), 지열에너지 (전세계 자원의 40% 보유) 전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며 고무, 주석, 니켈, 석탄 매장량은 세계 2위, 코코아 3위, 구리 5위, 금 7위의 자원대국이다.

어업분야에서는 반정제 및 정제 카라기난 추출, 알카리칩, 유제품, 제약및 파생제품 생산분야 및 참치 가공산업 분야에서 많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2015 – 2019년 투자우선 산업을 보면 첫째, 전력발전 사업으로 35,000 MW 신규 프로젝트 계

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노동집약 분야로 섬유, 식음료, 가구, 장난감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수입대체 산업으로 화학 및 제약, 제철분야, 넷째, 수출지향산업 (전자, CPO 및 유관제품, 목재및 펄프 제지, 자동차, 기계, 고무제품, 생선 및 유관제품, 새우가공등) 다섯째, 천연자원 개발산업 (코코아, 설탕, 제련), 여섯째, 해양산업 (선박, 조선, 항구, 냉장시설, ICT Maritime) 일곱째, 관광산업 (전략 관광지대, MICE) 등 일곱개 분야를 정해놓고 있다.

신성장 동력센터로서 4개의 자유무역지역, 현재 8개의 경제특구를 11개로 확대하고, 79인 산업단지를 15군데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바지역은 첨단기술산업, 노동집약산업, 소비재산업으로 육성하며 자바이외 지역은 천연자원개발을 위한 가공산업 중심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조산업의 진흥에 바탕을 둔 2015 – 2019년 경제운용 목표는 평균 GDP 성장률 7%, 평균 제조업 성장률 7.4%, 제조산업의 평균 GDP 기여도 21.2% 를 목표로 하고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0년대 자원개발, 거대 내수시장 확장, 외국인투자 지속유입등으로 6%대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중국의 경기둔화로 원자재 가격하락, 수출과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정체, 환율불안 및 경상수지 적자방어를 위한 긴축정책등으로 5%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또한, 주가와 루피아 가치급락 (환율상승), 외환보유고 부족등으로 전반적인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기관은 2016년 경제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수정하였다.

<기관별 2015-2016년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기관명	'15년전망		'16년전망	
발표시기	상반기발표	하반기발표 (감소치)	상반기발표	하반기발표 (감소치)
인니정부	5.7%	5.5%(-0.2)	5.5%	5.3%(-0.2)
World Bank	5.2%	4.7%(-0.5)	5.5%	5.3%(-0.2)
ADB	5.5%	4.9%(-0.6)	6.0%	5.4%(-0.6)
무디스	5.0%	4.7%(-0.3)	5.5%	4.7%(-0.8)

반면 고용안정, 견고한 민간소비, 인프라 건설 확대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민간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주도 (전체 GDP 의 60% 내외)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부문에선 201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총 외채가 증가하여 미국 연준의 테이퍼

링 이후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3분기 경상수지는 GDP의 2.1% 수준인 40억불 적자를 기록하며 2011년 4분기 부터 16분기 연속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적자규모는 2012년 2분기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나, 이는 수출개선보다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환율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12,189 루피아로 환율이 급등, 2014년에 12,440, 2015년에 13,835로 마감하였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기 둔화, 경상수지 적자등 불안요인으로 말레이 링깃화와 더불어 루피아는 아시아통화중 가장 심한 가치하락 (환율상승) 을 보여주었다.

인플레이션은 2014년말 실시된 유가인상, 2015년 들어 쌀, 소고기등 식품가격 상승으로 2015년말 현재 중앙은행 관리목표인 4±1%를 넘는 7.1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인니중앙은행(BI)은 2015년 2월 경기부양을 위해 7.5%로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16년 1월 14일 다시 7.25%로 인하하였다.

2014년 인니 총 투자는 463조 루피아로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으나, 달러화 기준 FDI는 285억불로 0.3% 감소하였다. 2015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2015년 2분기 루피아 기준 총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하였으나, FDI는 0.8%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동향을 보면,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수요하락으로 광업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확대로 성장추세, 건설업은 성장추세로 보인다.

2016년 인도네시아 호조산업 및 부진산업 전망

호조산업	부진산업
농업, 전자, 자동차, 철강산업, 건설업	항공산업, 화학및석유화학, 섬유

* Global Business Guide

봉제산업, 자동차, 전자, 항공등이 근간이나, 자동차, 전자의 경우 소비침체로 2015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봉제산업은 2011년 기준 종사인원 약 130만명으로 생산량중 61%는 수출, 우리기업도 약 400개로 고용 45만명, 수출 70억 달러 수준 달성하였다.

전자산업은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등 한국과 일본기업외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니 독자 브랜드와 중국 Midea 등이 선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인니 국내 조립일본차가 시장점유율 92%를 차지,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중이다.

인도네시아 2010-2014 자동차판매 및 생산 현황 (단위 : 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월)
자동차판매	764,710	894,164	1,116,230	1,229,901	1,235,190	940,072
국내 생산	702,508	837,938	1,045,861	1,208,211	1,219,590	1,208,804

* 인도네시아 자동차 협회(Gaikindo)

항공산업은 1970년대 중반 국영기업 IPTN 설립 후 스페인 CASA, 독일 Messerschmitt, 네덜란드 Fokker와 제휴를 통해 항공기 생산개시, 지속적으로 정부주도 사업추진이 활발하다.

건설업은 2014년 조코위 신정부 출범이후 인프라개발 계획에 따라 크게 성장이 예상되며, 해외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있다.

건설산업 성장률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율	7.0%	6.1%	7.4%	6.6%	7.8%

* Global Business Guide

유통분야는 현지 중산층의 소비구매력 증가에 따라 시장확대가 예상되며, 금융업은 최저임금 인상, 소득수준 향상으로 대상 고객층이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2. 최근 경제정책

가. 1차 - 8차 Economic Package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 5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를 첫 발표한 이후, 연이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1차 – 8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2015년 9월 5일, 1차 경제정책 패키지

산업단지 추가 조성,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10가지의 주제로 국내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발표된 1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89개의 규제 완화 계획, 국가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 부동산등 자산관련 투자 활성화 계획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안정화, 루피아 환율 안정성 강화등 금융분야의 5개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다.

(2) 2015년 9월 29일, 2차 경제정책 패키지

2차 경제정책 패키지에는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임업 투자허가 간소화 등 5개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어 9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 안정정책도 발표되었다.

(3) 2015년 10월 7일, 3차 경제정책 패키지

1차, 2차 발표가 기업 사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정책 패키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료, 가스, 전기료 인하 및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등 실질적 정책이 포함돼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4) 2015년 10월 15일, 4차 경제정책 패키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 혹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노사의 임금협상 갈등이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판단, 법적 규제를 통해 노사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 경제지표를 활용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법제화하였다 (PP 78)

PP 78 호에 의한 최저임금 계산법

내년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 X (% 올해 인플레이션 + % 올해 GDP 성장률)
UMn = UMt + {UMt x (% Inflasit + % PDBt)}
예) 2016년 Batam 지역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268만5302루피아, 인플레이션은 8.21%, GDP 성장률은 5.57%였으므로 도식은 다음과 같다.
내년 최저임금 = Rp 2,685,302 + {Rp 2,685,302 x (8.21 % + 5.57 %)
= Rp 2,685,302 + {Rp 2,685,302 x 13.78 %)
= Rp 2,685,302 + Rp 370,034
= Rp 3,055,336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Batampos

서민사업융자(KUR)는 200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자립경영 지원을 위한 융자 지원제도로서 기존 금리는 연 22%였으나, 4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12%로 하향 조정됐으며, 대상자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2015년 10월 22일, 5차 경제정책 패키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이라고 공표하며 자산 재평가를 장려하였다.
이 소득세 인센티브는 공기업, 사기업 및 개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조정부 Rizal Ramli 장관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세 감세로 경제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평가하여.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통해 대폭 상승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기업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세가 약 10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 투자신탁의 이중과세를 철폐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투자 신탁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인도네시아 자산의 국내 재반입을 꾀하고 있다.
OJK의 감사위원회 Muliaman Hadad 회장은 현재 해외에서 거래되는 인도네시아의 자산은 약 30조 루피아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No	분야	세부 사항
1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소득세(PPh) 감세	현재까지는 자산재평가시 10%의 세율이 적용됐음. 경제 정책 패키지 5단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세 인센티브가 주어짐. –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 시행 시, 자산 재평가차액에 따른 소득세는 3%로 규정함.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산 재평가 시행 시, 4%의 소득세를 부과함. – 2016년 7월 1일~12월 31일 자산재평가 시행 시 6%의 소득세를 부과함. **자산 재평가시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 – 자산 재평가를 시행해 기업 자산가치 증가. – 자산 재평가차액은 사업확장 및 운영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음. 기업 재정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음.

2	부동산 투자신탁(DIRE/REIT)의 이중과세 철폐	– 부동산 투자신탁(DIRE)은 투자신탁과 유사한 집합투자계약(KIK)임. 부동산 투자신탁은 순자산가치(NAB)를 사용함. – 부동산 투자신탁은 부동산 형태의 기초자산에 금전을 예탁함.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을 통해, 투자자는 직접적인 구매없이 물리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투자신탁은 특수목적회사(SPV)와 부동산 투자신탁 발행 회사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징수함. 그 외의 세금으로는 5%의 토지건물취득세가 있음.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투자신탁은 면세 대상임.

자료원: KONTAN

(6) 2015년 11월 4일, 6차 경제정책 패키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정부규정안(RPP)에 준거해 경제특구 투자유치 활성화 지역자원 활용 증대를 통한 실업자 감소 및 지역주민 구매력 향상을 목표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경제특구에 부여 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부여 예정 경제특구는 아래 8곳을 정하고 있다.
Tanjung Lesung 경제특구(Banten), Sei Mangkei 경제특구(Sumatera Utara), Tanjung Api–Api 경제특구(Sumatera Selatan), Palu 경제특구(Sulawesi Tenggara), Bitung 경제특구(Sulawesi Utara), Morotai 경제특구(Maluku Utara), Mandalika 경제특구(NTB), 및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경제특구(Kaltim).

경제특구 대상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No	분야	혜택
1	소득세	● 주요 영업활동(Tax Holiday) – 1조 루피아 이상의 투자 규모일 경우, 10~25년간 20~100%의 소득세 감면 – 50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규모일 경우, 5~15년간 20~100%의 소득세 감면 ● 주요 영업 외 영업활동(Tax Allowance) – 6년간 세후이익의 30%를 분할하여 손금산입 – 가속상각 – 배당소득세 최대 10%로 특례세율 적용 – 이월결손금 적용항목별로 1년씩 추가 최대 10년간 공제연장 적용

2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소비세	● 수입 시 : 비징수 ● 보세구역(TLDDP)에서 경제특구(KEK)로 반입시 : 비징수 ● 경제특구(KEK)에서 보세구역(TLDDP)으로 반출시: 비징수 ● 경제특구(KEK) 내 운송시 : 비징수 ● 다른 경제특구(KEK)로 운송시 : 비징수
3	관세	경제특구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시 : 원산지 증명서(SKA)에 따른 관세 부과.
4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 외국인/외국기업 경제특구 내에서 거주지/부동산 소유 가능(연립주택 혹은 다세대주택) ● 거주지/부동산 보유자는 보증서로 경제특구 운영기업의 거주 허가서를 받게 됨. ● 매우 고가인 사치품의 경우 사치품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5	주요 관광활동	● 건설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음. ● 흥행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음.
6	인력	● 경제특구의 기업마다 하나의 노조가 참석해 특별 제3자 협력위원 및 임금평가위원회 포럼(Dewan Pengupahan dan LKS Tripartit Khusus : 정부, 노조, 기업이 모여 노동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 개최 ● 경제특구 내 외국인 인력 고용 계획(RPTKA) 인준 및 기간 연장 ● 경제특구 내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IMTA) 기간 연장
7	이민행정	● 30일간 방문 비자로 입국시 최대 5번 30일씩 연장 가능 ● 1년간 유효한 복수 방문비자(복수 비자) 발급 ● 경제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 허가서 발급 ● 관광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경로자에게 거주 허가서 발급
8	토지	● 경제특구내 사기업에는 건물 사용권(HGB)을 추가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음. ● 경제특구 관리자는 토지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9	허가 절차	● 경제특구 관리자는 경제특구내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허가 절차를 늦어도 3시간 이내에 완료 ● 체크리스트(허가 조건 목록)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 절차 간소화 ● 경제특구 관리자의 토지, 인력, 이민행정 관련 허가 여부 결정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

자료원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7) 7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년 11월 23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패키지를 점검하는 것을 우선으로 7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를 연기하였다.

투자조정청 Azhar Lubis 차관은 조세감면조치 (Tax Allowance)에 대한 정부령 18호 2015년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추가적인 소득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신발 및 의류산업이 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에 주는 혜택 외에도 2,0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노동집약적 기업 종사자들에게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중에 있다.

경제조정부 Edy Putra Irawady 차관은 노동집약적 산업 활성화정책 이외에도 물류분야 인센티브 정책 및 마을 기금 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 7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2015년 11월 26일 열린 Kompas CEO 포럼에서 국가개발 계획청 Sofyan Dijalil 청장은 지난 2010~2014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투자규제만 4만 2000개 가 넘는다며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한 규제완화 및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현재 134개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70%만 실현된 상황이며, 향후 발표 될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월평균 2개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향후 정책실현 과정 및 발 표될 정책 패키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8) 8차 경제정책 패키지

2015년 12월 21일 발표된 패키지에서는 항공부품산업 무관세 정책이 발표되었다. (5 – 15 %➡0%) 이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산업 발전과 항공기 정비, 수리, 점검분야의 산업 육성 추진, 항공 안전성 강화 목적이 주요 내용이다.

항공기 서비스분야 발전을 위한 무관세 전환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항공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 (INACA)는 운용비용 절감과 국내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무관세 정책은 필수적이고 항공기 제조산업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있다.

나. TPP 와 RCEP

(1) TPP와 RCEP,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인도네시아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두 가지 경제협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에 10개 ASEAN국가들에 의해 정식으로 개시됐으며, 주요 관여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TPP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RCEP과 TPP 비교표

(단위 : 백만 명, %)

구분	참가국	주도국	인구	세계 GDP 비중	타결목표
RCEP	16개국(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중국	3,400	28.4	2015년
TPP	12개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미국	800	38.2	2015년

자료원 : 산업자원통상부

(2) 국제 변수

RCEP 체결 움직임속에 국제적인 변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긴장관계가 지속 될 경우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정부가 2012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체결된 ASEAN과 중국간 자유무역 협정이 막대한 관세수입의 감소등의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협정 체결이후 태국으로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경제협정후의 경쟁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내의 인프라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RCEP 타결도 지연되고 있다.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뒤로 8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나, 관세 철폐품목 비율인 '자율화율'에 대해 참가국들 간 의견 차가 두드러진 관계로 답보 상태에 있다.

일본은 관세 자율화율을 80%로 하고 싶어하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40%로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ASEAN이 주도권을 쥐는 RCEP으로 가입 의향을 갖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세안 경제통합(AEC)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하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지역 국경분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나, 자유무역협정의 부문별 손실 가능성등이 향후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판단을 좌우 할 것으로 보인다.

RCEP, AEC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구 등 기초적인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국내사정 속에서 경제통합이 자국의 제품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 AEC 와 인도네시아

(1) AEC 출범에 대한 인도네시아정부의 입장

조코위 대통령은 AEC 출범에 능동적으로 참여 해야하며, 그것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외교(Economic Diplomacy)'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양국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쌍무적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있다.

전임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은 "A thousand friends and zero enemies" 원칙에 의한 글로벌 외교를 지향했으나,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 인도네시아가 TPP, FTAAP 등의 협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고 밝히는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입장이다.
(자료원: 'Changing tone in foreign policy', EIU)

조코위 대통령은 AEC 협상과정에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를 경계하는 ASEAN 국가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AEC가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낙관하고있다 (자료원 : Jakarta Post, 2015.1.12).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 AEC는 ASEAN 10개국이 2015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제공동체 – 단일 경제권을 기반으로 4대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5대 원칙, 12개 분야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4대 중장기목표: 단일시장 및 생산거점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 블록화, 균형적인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 5대 원칙 :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12개 분야 : 비즈니스,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오락, 관광/여행, 문화/스포츠, 운송 – 역내 관세철폐를 포함해 아세안 회원국 간 숙련인력 인증, 거시경제정책 협조, 인프라와 통신 연결 향상, e-ASEAN을 통한 전자거래 활성화, 민간부문의 참여강화 등을 추진 중

(2) AEC 출범이 인도네시아에 미칠 영향

역내 회원국 간 은행시스템 통합 및 거시경제 정책협조를 통해 미국, EU, 중국등에서 발생한 충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악화등에 따른 총 외채의 증가로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됐는데, 美 테이퍼링등의 대외 충격이 발생하자 2013년에 환율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

상품 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역내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통합으로 역내 거시경

제 안정성이 제고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증가하는 경제성장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AEC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산업부문의 30% 정도만 대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것으로 평가하고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단위 : 억 달러, %)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4.6	6.2	6.5	6.3	5.8	5.02
외국인투자금액	108	162	195	246	286	
수출실적	1,165	1,578	2,035	1,900	1,825.7	1480.5
수입실적	968	1,357	1,774	1,917	1,866.3	1497.9
경상수지	106	56	119	-241	-243	-196

주: 1) 2012년 이후 계속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음.
2) 경상수지통계는 2014년 10월 기준 (자료원: 인도네시아통계청)

(3) AEC 관련 정부정책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RI, Bank Rakyat Indonesia)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말련 중앙은행과 은행시스템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다.
Agu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장은 ASEAN 10개국을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역내 은행 시스템 통합의 토대를 이루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원 : Jakarta Post, 2014.12.31)

인도네시아의 물류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으로, AEC 출범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개 기업으로부터 약 6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3. 한국기업 현황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의 하나이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 307.8억불을 기록한 이래 감소추세이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167.3억불을 기록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제품, 직물류, 합성수지, 철강, 합성고무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 석탄, 동광, 원유, 펄프, 천연고무등이다.

한 · 인니 교역통계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6,000 (△24.4)	8,897 (48.3)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417 (△1.3)	7,875 (△30.7)
수 입	9,264 (△18.2)	13,986 (51.0)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71 (△7.0)	8,853 (△27.8)
무역수지	△3,264	△5,089	△3,652	△1,721	△1,622	△854	△978
총 교역액	15,264	22,883	30,780	29,631	24,758	23,688	16,728

한 · 인니 5대 주요품목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수출(2015년)			수입(2015년)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휘발유	1,042	-30.7	천연가스	1,592	-57.8
2	경유	831	-66.4	유연탄	1,519	-31.0
3	편직물	576	-10.0	동광	473	95.9
4	합성수지	424	-26.2	원유	444	-40.5
5	열연강판	215	-44.4	기타석탄	284	44.2
	소 계	3,088		소계	4,312	
	총 계	**7,875**	**-30.7**	총계	**8,853**	**-27.8**

인도네시아는 미국, 홍콩, 중국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11위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4대 투자국이다. (2015년기준) 2015년 1–9월 대인도네시아 투자(억불) 1 – 3위는 싱가폴(35.5), 말련(29.1), 일본(25.0)의 순서이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1970 – 80년대에 봉제 및 신발등 노동집약 분야에 진출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힘 입어 타 산업으로의 진출이 본격화 되었으며 일례로 POSCO (PT. Krakatau Steel) , Hankook Tire, Lotte Mart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시작되었고, 금융, 물류 및 문화산업등의 인수 합병을 통한 진출이 활발하였다.
또한 토착기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Korindo Group, Miwon Indonesia, Kideco Jaya Agung 등의 확장도 빼 놓을 수 없다.

2016년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수는 약 2,200개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 할 경우 3,000개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회사들은 제조업, 자원 및 에너지, 봉제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 초 인도네시아 투자청이 외국인 투자 최소액을 120만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을 25% (30만 달러) 로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력시장은 중국, 일본의 기업이 선점해 왔으나 최근들어 한국 발전회사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발전소 건설에 대해 PPP Scheme 으로 진입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함으로써 발전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중국업체는 품질문제, 일본업체는 가격 문제가 있어, 품질도 양호하고 가격 경쟁력도 준수한 한국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연도	투자 실현		
	연도 건수	금액(백만 불)	금액 증가율
2010	355	329	-47%
2011	456	1,219	271%
2012	421	1,950	60%
2013	807	2,206	13%
2014	1,336	1,127	-49%
2015.1~9	1,519	1,003	-

- 2014년 한국의 투자는 2013년 22.1억불 대비 48.9% 감소함.
  이는 포스코, 한국타이어등 대규모 투자가 2013년 일단락된데 기인함

주요현지진출기업 (투자액順 10위)

(단위: 백만불)

회사명	진출	분야	투자	회사명	진출	분야	투자
1. 포스코 (Kartakau Posco)	2010	철강생산	3,000	6. LG상사	1981	석탄, 팜오일	200
2. 한국타이어	2013	타이어 생산,판매	1,000	7. 윈텍스 타일	2010	원단제조, 염색	200
3. CJ인도네시아	1988	사료/식품, 영화, 물류	900	8. 중부발전	2009	발전소 운영	170
4. 코린도그룹	1969	목재, 제지, 중공업	550	9. 삼 탄 (Perta Samtan)	2010	천연가스	136
5. SK (Patra-SK)	2006	윤활유 원료 생산	240	10. 대 상 (Kirin Miwon Fd.)	2006	조미료 생산, 유통	100

- 업종별로는 광업(2억7천만불), 기계 /전자(1억7천만불) 투자액이 크며, 건수로는 호텔 · 레스토랑이 320건으로 최다임. (2014년)
- 지역별로는 서부자바(4억불), 동부 깔리만탄(2억7천만불), 반뜬(1억8천만불) 순으로 투자함 (2014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 (U$ 천달러)

산업분야	2012		2013		2014	
	산업분야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농업	11	33,868	11	59,528	7	35,471
축산업	-	-	-	-	3	718
임업	-	-	4	23,526	7	5,080
수산업	1	0	2	0	3	5,500
광업	18	51,787	26	105,431	23	267,833
1차 산업 소계	30	85,654	43	188,484	43	314,602
식품	15	15,152	12	7,739	21	50,451
섬유	76	148,364	82	69,540	122	95,159
가죽제품 및 신발	30	15,395	23	35,294	51	95,767
목재	9	1,258	8	3,015	10	9,731
제지 및 인쇄	5	1,641	6	116	15	3,940

화학 및 제약	14	167,908	33	41,127	39	28,492
고무 및 플라스틱	25	288,107	36	44,582	59	140,172
비철금속	3	1,800	7	3,000	2	300
금속, 기계 전자	48	1,014,346	61	1,512,645	122	175,737
의료 및 정밀광학기계	1	57	3	2,571	2	7,016
자동차 및 수송장비	2	0	3	1,524	3	615
기타산업	35	21,183	39	57,623	44	33,097
2차 산업 소계	263	1,675,211	313	1,778,776	490	640,478
건설	2	123,224	2	133,385	8	29,261
무역 / 수선	7	6,334	16	3,914	32	26,052
호텔 및 레스토랑	85	19,571	190	59,520	320	69,846
운송 및 창고 / 통신	9	34,007	11	3,510	28	3,842
부동산 및 산업단지	2	88	9	26,389	25	12,625
전기 / 가스 / 수도	1	500	2	1,355	9	12,542
기타 서비스	19	5,115	55	10,147	99	17,371
3차 산업 소계	125	188,839	285	238,220	521	171,539
전체	**418**	**1,949,704**	**641**	**2,205,480**	**1,054**	**1,126,619**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역별 투자 현황

지역	건수	투자금액 (U$ 천달러)
West Java	322	406,277
East Kalimantan	10	274,902
Banten	207	184,455
East Java	47	68,086
Jakarta	328	55,567
South Kalimantan	9	54,487
Bangka Belitung	3	21,213
Central Java	48	20,184
South Sumatera	5	10,363
North Sumatera	6	7,309
Lampung	5	5,287
Aceh	5	3,693
Yogyakarta	10	3,053
Jambi	1	2,438

South Sulawesi	4	1,618
Gorontalo	1	1,443
North Sulawesi	2	1,384
West Sulawesi	4	1,315
West Nusa Tenggara	4	1,029
Riau Islands	2	895
East Nusa Tenggara	6	709
Papua	4	290
Bali	10	235
Maluku	2	50
South East Sulawesi	2	43
West Kalimantan	1	0
Central Kalimantan	1	0
North Maluku	1	0
East Kalimantan	-	-
West Papua	-	-
Total	**1,054**	**1,126,619**

Ⅱ 분야별 주요정책

1. 무역 정책
2. 수출입 / 통관 정책
3. 조세 정책
4. 노동 정책
5. VISA 정책

1. 무역정책

가. SNI 인증제도

(1) 현 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SNI를 강화해 왔다.
이 제도의 도입 명분은 제품의 경쟁력 및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외국과의 표준화 상호인증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증취득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구조를 적용함으로, 실질적인 수입 억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생산기반이 구축된 제품 위주로 편성해 내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뒀으나 점차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수입억제나 추가 인증수입 등의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을 앞두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이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년 3월 한 차례 94개 품목을 강제인증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농업부문 제품 6개, 식음료제품 12개, 기초금속철–철강 제품 12개, 비료–석유화학 제품 12개, 신발–가죽 제품 3개, 봉제 제품 1개). 추가 인증 확대품목등 변동사항 및 품목별 개별 인증기관은 주관기관인 BSN (Badan Standardisasi National } 홈페이지 : http://www.bsn.or.id/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정부는 기업의 SNI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SNI Award'를 수여하고 소비자의 SNI 인증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I love Indonesia Product' 라는 SNI 소비자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SPPT–SNI)

(3) 인증 절차

a. 인도네시아정부 인증기관에 규격인증 신청서제출
b.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c. 인증비용 납부 후 인증기관 현장실사 실시 (인증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실사를 하게되면, 모든 비용은 의뢰사에서 지불)
d. 인도네시아 샘플분석 기관에 의뢰인증기관 내부 협의 후 인증서(SPPT–SNI) 발급

e.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 인증서 발행

- 제출서류
  신청서 / 상표 등록증 / 지정 수입업자와의 MOU / 카달로그 원본(데이터. 자료) / 홍보책자 / 사용자 메뉴얼 / 설치 매뉴얼 /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회로도, 조립도등 제품관련 자료 / 부품 또는 설비 목록표 / 외국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보유시)
- 유효기간
  제품 인증기간은 4년이며 4년째 정기 공장심사 3개월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첫해와 동일하게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매년 1회 정기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정기 공장심사 3개월전에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 인증마크
  마크하단에 SNI 규격번호와 인증 기관번호를기재해야한다.

나. 라벨 (Label) 규정 강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제품 라벨 강제규정' 과 관련된 법령 (62/M-DAG/PER/12/2009) 을 2010년 9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2013년 11월 26일에 다시 공표된 법령(2014년 5월 26일 시행)은 4개로 분류된 품목리스트에 분류 5를 추가해 세라믹 타일, 의류, 자동차부품 등 총 49개 품목을 강제 라벨 의무품목에 추가하였다.
2014년에는 전자레인지(Hs code 8516.50.00.00) 및 컴퓨터 태블릿((Hs code 8471.30.90.00)이 새로 추가됐으며,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라벨이 부착돼야 하는 제품을 다음의 4개 군으로 분류된다.

(1) 분류 1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총 44개 대분류)
(2) 분류 2 : 건설 자재(총 8개 대분류)
(3) 분류 3 :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4) 분류 4 : 기타 제품(총 23개 대분류)
(5) 분류 5 : 규정 대상 제품 추가(총 49개 품목)

제품 라벨 강제규정에 해당되는 제품판매 주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Director General of Standarization and Consumer Protection를 통해 인도네시아 라벨 인증서 (Surat Keterangan Pencantuman Label Dalam Bahasa Indonesia – SKPLBI) 을 받아야 한다.

신청 주체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서류 제출은 직접 무역부에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INATRADE*)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INATRADE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운영하는 무역 인증사이트이다.
(http://inatrade.kemendag.go.id)

신청 주체	제출 서류
국내 제조업자	1. 신청서(2013년 법령 Appendix 6에 첨부 양식 활용) 2. 제조제품 리스트 3. 제품에 부착될 라벨 샘플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세금등록 번호(NPWP)
수입자	1. 신청서(2013년 법령 Appendix 6에 첨부 양식 활용) 2. 수입 품목 리스트(HS code 포함) 3. 제품에 부착될 라벨 샘플 4. 수입허가증(API), 세금등록 번호(NPWP) 5. 수입하는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지가 찍힌 증명서

제출서류 및 샘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접수 후 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신청 주체는 SKPLBI를 발급받게 된다.

SKPLBI에 명시돼 있는대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 SKPLBIsms 계속 유효하며, 한 SKPLBI 한 제품에만 해당돼 다른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할 경우 새로운 SKPLBI를 발급 받아야 한다.

라벨에 표기돼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산자, 수입자 이름 및 주소
(2) 소비자 안전, 건강 및 제품 사용 설명법
(3) 위험 물질 표시 또는 경고 마크(필요할 경우)

라벨은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돼야 하며, 인도네시아어 라벨이 외국어 라벨보다 더 크거나 동일한 사이즈라야 함.

또한 인도네시아어 라벨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표기해서는 안된다.

제품 라벨 강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라벨없이 유통될 경우 전제품은 회수해야 하며, 관련된 회수비용은 관련자(제조업자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회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 면허(Surat Izin Usaha Perdagangan) 및 수입허가(Angka Pengenal Importir – API) 등 기타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최근 2015년 10월 1일부로 무역부 장관령 73/M–DAG/PER/2015 에 의거, 전술한 허가제에서 자율적 시행으로 변경되었다. (제품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다. 제 3 국 Invoicing 제한적 허용

종래 FTA내 수입 원산지증명 절차변경 법안 (SE–01/BC/2010) 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O Form D (CEPT – AFTA), Form AK (AKFTA), Form JIEPA (IJ–EPA) 의 경우에만, 제 3국 Invoice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한국에서 Invoicing 을 발행하는 경우 AKFTA 관세를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개정된 관련법령 SE–05/BC/2010 에 의거하여 현재 Form AK 에서는 제 3국 Invoicing 을 인정하고 있다.

라. 중고 자본재 수입허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10년에 중고 자본재 수입허가 품목리스트 (관련 법령은 57/M–DAG/PER/12/2008 의 수정본) 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고 자본재는 'Use, Recondition & Remanufacturing'을 위해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관련 수입 중고 자본재는 '생산 프로세스' 혹은 '생산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법률은 설명하고 있다.

동 법률은 중고 자본재 수입이 '직접 사용자 (회사 및 공장)' Reconditioning 업체 (재수출 혹은 내수판매를 위해) 'Manufacturing 업체 (자체 생산 공정을 위해)', 에 의해서만 되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Reconditioning / Manufacturing 업체 ' 는 수입 중고자본재를 Reconditioning / Manufacturing 후 완제품으로 수출과 내수용을 사용할 경우, '허가 혹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Reconditioning / Manufacturing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수입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입회사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에 관한 감독관 인증서, 산업부 추천서, 구매자의 구매의향서 (최종 재화가 내국에서 판매될 경우, 생산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동 의향서 를 받아야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접 사용자인 수입자는 사업자 등록증 (SIUP), 수입등록증 (API), 납세증명서(NPWP)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세구역내 기업이 수입한 중고 자본재는 2년 사용 후, 보세구역내 다른 기업에게 이전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중고자본재에 대한 감독관의 기술 및 적격여부 검사가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투자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7년에 투자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투자금지 및 조건부 개방업종의 목록에 대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는 새로운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t Nomor36 Tahun 2010)이 제정 되었다.

주 내용은 마약, 화학병기, 무기, 무선/위성사업, 알코올 음료 제조, 카지노와 도박장 경영등의 경우에는 내자와 외자를 불문하고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삼림벌채, 택시/버스영업, 국내해운, 민영 텔레비젼/라디오방송, 신문/잡지발행, 영화사업등의 경우에는 외자투자가 금지되고, 기타사업 분야에 대하여는 투자지분 제한등의 규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4년 4월 23일자 유도요노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되어 제 39호로 발표되어 적용중이다.

투자 제한 사업분야는 농업, 임업등 총 7개 분야, 15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관련 담당기관의 승인을 받는등 비상업적 용도 목적 이외에는 투자가 불가하며, 25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조건부 개방 사업 분야로 분류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농업 분야

면적 25 헥타르 이상 '주식작물 종자 배양 및 육성/재배' 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49% 로 제한, 25헥타르 미만은 투자 불가.

원예 관련 사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30% 로 제한.

(2) 에너지 / 광업 분야

육지 석유/가스 제작설치 및 저장소, 배관설치, 수평 / 수직탱크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1 – 10 MW 발전소, 외국인 지분 49% 로 제한.

(3) 산업 / 제조 분야

오토바이 수리업, 외국인투자 불가.

자동차 수리업, 외국인지분 49% 로 제한.

(4) 건설 / 공사 분야

외국인의 경우 10억 루피아 이상의 건설만 가능하도록 제한.

기술검사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지분 최대 55% 로 제한.

(5) 무역 / 도,소매 분야

소매업의 경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 불가 (인터넷 쇼핑몰, 우편판매등 불가)

부동산 중개업, 외국인투자 불가 통업과 창고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 33% 로 제한. 주류 무역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불가.

(6) 관광 / 창조경제 분야

식당의 경우 외국인지분 51% 로 제한.

노래방의 경우 외국인지분 49%로 제한.

광고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불가 (아세안 국가는 최대 51% 가능)

(7) 교통 / 운송 분야

육로 화물 운송, 외국인지분 49% 로 제한.

해상 운송, 외국인지분 49% 로 제한.

(8) 정보 / 통신 분야

신문, 잡지 발행, 외국인투자 불가.

(9) 인력 / 송출 분야

인력 공급및 직업 훈련, 외국인지분 최대 49% 로 제한.

(10)교육 / 문화 분야

사설 교육, 외국인지분 49% 로 제한.

(11)보건 / 의료 분야

개인 의료원, 외국인투자 불가.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청은 2015년 말, 코참을 비롯한 각국 상공회의소에 네가티브 리스트의 개정의견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코참 명의로 투자청에 제출된 개정의견이 본 보고서의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 ➔ 1.투자환경 ➔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렴된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1 / 4 분기중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할 예정이며 그 방향은 8차까지 발표된 Economic Package 와 궤를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바.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법

인도네시아 중산 소비계층 확대에 따라 미니마트 및 패스트푸드 등과 같은 현대유통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일부 유통회사의 독과점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 제품도 현대 유통채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을 발표하였다. (관련법령 무역부 No. 57/M-DAG/PER/2012)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15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되는 매장의 40%는 프랜차이즈 매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매장을 초과로 소유하려는 경우 최소 4개 이상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중소기업이 프랜차이즈 소유주로 참여해야 한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150개 매장을 소유하지만, 무역부가 매장 운영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를 거쳐 매장을 더 설립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150개 이상 매장을 소유 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규정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종류와 품목은 최소 80% 이상의 현지 제품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무역부는 평가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프랜차이즈 운영 매장 재화 규제를 80% 이하로 조정 할 수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자사 운영
1) 경영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 수를 최대 5년내로 규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함.
2) 매장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전체 매장의 최소 20%를 매년 매도해 규제에 적절한 매장 수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장 수 조정에 관해 무역부에 매년 보고해야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으로 일부 유통회사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현대 유통채널에 참여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급격한 팽창속도를 늦추었으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령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정부가 정책 집행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 유통 점포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과 근접한 위치에는 현대 유통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진입해 해당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 인도네시아 국산부품 사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 서비스 조달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산업부 장관령 No.15/ M-IND/PER/2/2011(정부입찰 국산부품 사용요건 전반에 대한 정의), 16/M-IND/ PER/2/2011(국산부품 사용요건 계산법 및 인증 획득절차 등)에 명시되어 있다.

TKDN은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 장벽중 하나로, 정부사업 입찰 수주기업은 국산 부품 사용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은 현지 생산제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사용해야 한다.

WTO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정부발주 입찰에 국산부품 사용요건등 자국 기업우대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 (옵저버)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산부품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 품목은 총 1257개의 상품에 해당되며 18개 품목군으로 분류된다.

(1) 농업용 비료(18), 농기계 장비(12), 광산기계 장비(3), 석유 가스용 기계 장비(174), 산업용 기계 장비(10), 시공재료(43), 금속 금속품(125), 화학약품 N제품(148), 전자 기기(21), 전기(385), 전기통신(31), 수송(13), 의료기기 장비(90), 실험장비(3), 컴퓨터 사무용품(39), 작업복 용품(21), 스포츠 교육용품(12), 그 외(109)

(2) 세부 품목 리스트는 TKDN 웹사이트(http://tkdn.kemenperin.go.id/) 통해 확인 가능

인증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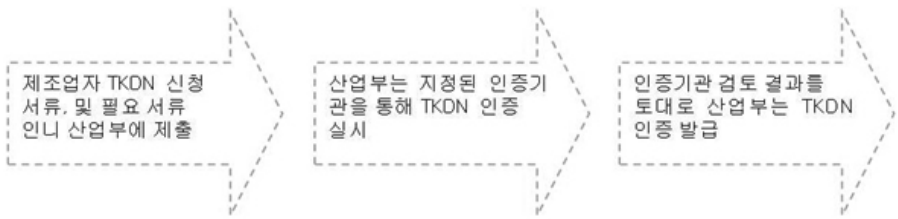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TKDN 인증을 아래 두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PT. Surveyor Indonesia

– 전화번호 / 팩스 : (62-21) 5265 526 ext. 863 / (62-21) 5265 525

– 웹사이트 : www.ptsi.co.id
– 주소 : Graha Surveyor Indonesia, Jln.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PT. Sucofindo

– 전화번호 / 팩스 : (62–21)7983 666 ext. 8484 / (62–21) 7986 473
– 웹사이트 : www.sucofindo.co.id
– 주소 : Graha Sucofindo, Jln.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12780

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강화

인도네시아의 종교별 신도수는 아래와 같다.

(1) 이슬람 신도 2억 1000만명
(2) 기독교 신도 1200만명
(3) 힌두교 신도 5–6백만명
(4) 가톨릭 신도 4백만명
(5) 불교신도 150만명
(6) 유교신도 12만명

(자료원 : 인도네시아 종교부 코참 면담)

현재 할랄인증은 이슬람 원로협의 평의회 (MUI) 산하 (LPPOM MUI / 보고르 소재) 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앞으로 2017년에는 종교부로 그 인증기관이 이양되고 2019년부터는 할랄과 넌할랄의 부착표시가 공식화되어 그 이후에 는 할랄인증이 공식 국제표준화 인증과 다를바 없는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교부에서는 2017/2019 종교부 주재 관할 할랄 인증마크를 내주기 위한 할랄위원회 (BPJPH)를 종교부 산하에 두고, 여기에 특별할랄부서 (LPH) 를 설립, 할랄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소요절차 기간을 최장 43일로 잠정 결정하고있다.

종교부로 이양 될 경우, 할랄 인증 획득과정은 초기 LPH 에 등록, 원료분석 및 검사 과정을 거쳐 BPJPH 할랄 위원회에 보고, 그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MUI 에서는 이슬람 샤리아 Fatwa, 이슬람 종교차원의 학자들의 유권해석을 통해 할랄 허용과 금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종교부로 넘어가기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등 많은 소요시간과 할랄 인증 범위에 대한 많은 연구 조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종교부 차관보는 전했다.

할랄인증 마크 획득을 위한 비용부담의 기업형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대기업 (자체부담)

(2) 중소기업 (자체부담 또는 공동대응 부담 가능)
(3) 소규모 영세기업 (정부보조금 지원 또는 사회단체 지원 검토)

그러나 현재 이미 LPPOM MUI 산하로부터 할랄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종교부로 이관되어도 별도로 할랄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없다.
기업은 해당 법안이 인도네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신에 어긋나며 이미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인증제도(SNI)와 상충된다고 하는 의견도있다.
대부분의 식, 음료 제조업체는 할랄 의무 인증에 대비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원재료 뿐 아니라 생산설비, 공정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

할랄 인증을 받지않은 의약품에 '비할랄' 마크 표시를 의무화 할 경우 비 할랄 의약품을 대체 할 수 있는 할랄 의약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게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할랄 의약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민 건강수준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자. 회사 폴더 등록제

2014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제도로 인도네시아 투자청 통합서비스의 질을 늘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 폴더 등록제를 실시중이다.
2014년 10월 1일부터 투자청은 회사 폴더를 만들지 않은 인도네시아 법인회사의 허가신청을 받지 않고있다.

차. 투자승인 요청 온라인 접수

2014년 12월 15일자로 BKPM 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승인 신청은 더 이상 창구 신청을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On Line Tracking System) 가능하다.
추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현재 투자승인 프로세스 진행상황 체크 및 10일내 승인가능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2015년 1월부로 각 인도네시아 부처별 (산업부 등) 로 분리되어 있었던 투자승인 업무를 BKPM 으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카. 투자이행 보고 (LKPM) 의무화

모든 투자법인은 투자이행 보고 (LKPM) 을 2015년 1월 12일 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나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았던 규정으로 최근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영구사업허가서 (IUT) 를 받지못한 업체는 4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며, IUT 를 받은 업체는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BKPM 은 투자승인의 취소를 경고하고 있다.

타. 신규투자 관세 감면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수입 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관련품목 목록(Master List)을 작성하고, 이를 투자 조정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기존의 관세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의 수입관세만 납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령 2000년 135호)

2. 수출입 / 통관 정책

가. 수입 허가 체계

수입업체의 성격에 따라 Manufacturer와 Trading Company로 구분해 수입허가가 발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산업체 수입업체를 구분하는 이유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 IP(Producer Importer)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Manufacturer로서, 주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Raw material)를 수입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 IT(Registered Importer)는 완제품을 수입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Trading Company로서, 완제품을 수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3) PI(Import License)는 개인과 기업이 특정제품(원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취득해야 하는 수입허가를 의미한다.
(4) Import Verification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허가를 신청한 업체를 실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P 혹은 IT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존재하던 API-U 규정이 완화되어 기존 21개 Section에서 업종 해당 품목으로 완화되었다.
API-U 상에 HS Code 명시규정도 폐지되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2016년 6월 30일 까지 갱신 예정이다. (관련 법령 : 무역부 장관령 70/M-DAG/PER/2015) 따라서 개별업체가 수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 특수 수입자번호 폐지

2015년 7월 9일부터 무역부 장관령 50/M-DAG/PER/2015에 의거 NPIK 제도가 폐지되었다.

(1) 원래 Rice, Corn, Soybean, Sugar, Textile and textile products, Shoes and other foot apparel, Electronics and its components, Toys 등 품목이 해당되었음.
(2) NPIK는기존에 수입자 등록번호(API)를 갖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5년 이었음.
(3) NPIK 소유기업은 관련수입 상황에 대하여 매월 15일에 무역부에 서면보고를 해야했음.

다. 통관항구 제한 신선 농산물

인니정부는 농업부 장관령개정을 통해 2012년 6월 19일부터 수입 신선농산물(과일 및 채소류) 통관 항구를 축소하였다. 특히 인니 최대 항구인 자카르타소재 Tanjung Priok 항구를 폐쇄하고 대신, 동부자바 수라바야 부근 Tanjung Perak 항구만 개항하여 시행중이다.

동 조치는Tanjung Priok 항구의 검역 및 검사능력 과부하와 농산물 안정성확보가 주요 배경이다.

라. 보세구역 하청 제한, 위치 제한

인도네시아정부는 보세구역 하청 제한, 위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재무부장관령 147/PMK/04/2011을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대사관의 설득을 통하여 하청 제한시기 1년유예, 위치 제한시기 2년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무부장관령 255/PMK/04/2011을 발표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정부는 일부 제조공정의 하청용역을 허용하고, 보세구역 위치 제한 시기 4년간 유예하는 재무부장관령인 44/PM/04/2012를 2012년 3월16일 재 발표하였다.

마. Profiling 제도등 보세지역 진입 제한

KB (보세구역)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 과정이 필요하다.

6가지 평가요소 (등록번호, 규정위반 이력, 보고 이행 준수, IT Inventory 사용여부, 생산제품 종류, 사업장 위치) 에 따른 프로파일링 과정을 거쳐야 보세 구역 허가가 가능하다.

보세구역 허가를 득하고자하는 업체는 산업공단 지역내에 위치하거나 비 공단 지역인 경우 공장부지가 10,000 M2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2014년 10월 2일 부터 실시간 전산 재고관리 시스템 (IT Inventory) 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IT Inventory 는 세관에서 각 업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이다.

세관에 설치된 Monitoring Room 에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On Line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입고된 물품이 나가는 출구, 사람이 오가는 입구 및 출구, 작업장 등에 설치해야 하며 입구는 1개만 존재해야 함.)

바. 선적전 검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4월 1일자로 자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선적전 검사

(No.21-M-DAG / PER / 2 / 2009) 를 도입하였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선적전 검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HS-Code 기준으로 총 169개이며, 자동차, 전자, 조선, 중공업,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자체 수요로 수입하는 해당 철강재는 선적전 검사에서 면제되고 있다.

● 선적전검사는 아직도 하기 26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 되고 있다.

NO.	KOMODITAS	NO.	KOMODITAS
1	Tekstil dan Produk Tekstil	14	Besi atau Baja
2	Nitrocellulose	15	Kaca Lembaran
3	Beras	16	Obat Tradisional dan Suplemen Kesehatan
4	Garam	17	Bahan Berbahaya (B2)
5	Prekursor	18	Ban
6	Gula	19	Bahan Perusak Ozon (BPO)
7	Keramik	20	Hortikultura
8	Mesin Multifungsi Berwarna, Mesin Fotokopi Berwarna dan Mesin Printer Berwarna	21	Telepon Seluler, Komputer Genggam (Handheld)
9	Limbah Non Bahan Berbahaya dan Beracun(B3)	22	Pakaian Jadi
10	Elektronika	23	Semen Clinker dan Semen
11	Makanan dan Minuman	24	Baja Paduan
12	Alas Kaki	25	Barang Berbasis Sistem Pendingin
13	Mainan Anak-anak	26	TPT Batik dan Motif Batik

사. 수입 및 특정산업 선납 법인세 (PPH22) 규정 변경

인니정부는 사치품 판매세 면제로 인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최종소비재 수입에 대한 수입 선납 법인세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8월 9일부터 시행)

사치품 판매세 폐지는국내 생산상품과 수입상품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수입물량 증가, 무역수지 적자 확대등을 우려하여 사치품 판매세가 폐지된 제품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하였다.

사치품 판매세는 최종 공급가액에 부과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면 수입 선납 법인세는 수입업체의 기 납부세액이 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입선납법인세 세율인상 제품군

제품군	상 품
전자제품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컴퓨터스크린, TV, 에어컨, 비디오플레이어, 사진기, 스토버, 영사기, 식기세척기, 드라이어, 전자레인지
스포츠용품	골프장비, 요트등 스포츠용품
악기류	피아노, 현악기, 전자악기
브랜드상품	향수, 가방, 의류, 시계, 보석류, 신발, 선글라스, 안경, 귀금속
가정용, 사무 실용집기	카페트, 크리스탈 장식품, 의자등가구, 매트리스, 전등, 바닥타일

그리고 석탄, 광물의 수출, 판매에 대한 선납 법인세를 신설하였다

제 품 군	세율(%)	과세표준
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의수출 (Mining Cooperation Agreement or Contract of Work with Government에 의한 수출은 제외)	1.5	수출가격
IUP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석탄, 금속광물, 비 금속광물의 구매	1.5	판매가격
제조업자의 골드바 판매	0.45	판매가격

아. Form AK, Form E 심사 강화

Form AK, Form E 기재사항 확인요망 사항이 강화되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1) Form AK, Form E Manufacturer 명시 (7번 품명 표기란 하단)
2) Form E 의 경우 Manufacturer 미 확인시 수입관세 추징
3) 선적 제품 상세 구분하여 각각 명시
4) 선박 출항일 : 선박 출항후 실제 출항일 명시
5) 선박 출항후 3일 경과 후 발행시는 “Issued Retro-Actively”명시 확인
6) 도착항 상세 명시
7) 삼국간 거래인 경우 Third Party Invoicing 에 V 표기 확인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Form E 는 manufacturer 를 명시해야 한다.

자. 밀수 단속

(1) 불법 / 부정 무역 조사 강화

인니 정부는 불법/부정 무역조사 강화, 국내산업 회생 및 무역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항구 및 공항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고있다

(2) 주요 단속 대상 품목

의료,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쌀 등 주요소비재 집중 단속 세관과 식약청의 합동 단속으로 불법 수입 의약품 및 화장품을 압수하여 인니 무역부 SNI 규정 위반 제품및 라벨 미부착 제품을 단속하고 있는중이다

차. ATA Carnet 시행

ATA Carnet 이란 전세계 85개 회원국간 무관세 임시 통관 제도로서 인도네시아는 2015년 5월 15일부로 회원국 가입및 규정품목의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ATA Carnet 으로 수입 가능한 품목및 불가 품목은 아래와 같다.
상업용 샘플의 경우 ATA Carnet 으로도 무관세 통관이 어려우니 주의가 요망된다.

(1) ATA Carnet 수입 가능 품목

- 작업 용구
- 전시회 제품

(2) ATA Carnet 수입 불가 품목

- 상업용 샘플
- 농산품, 식료품, 위험물품, 부패 및 소모성 제품은 수입 불가

3. 조세 정책

가. 원 천 세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실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조세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에서 다양한 원천세를 규정하고 있다.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익월 2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지연납부를 하게되는 경우 매월 2%의 지연이자가 최대 48%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의해 과소납부 세금추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 가 발행되는 경우, 과소 납부액의 100%가 과징금으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원천 징수세의 종류는 크게 아래 5가지로 나뉘어 진다.

(1) PPh 21급여에 대한 소득세
(2) PPh 22 수입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소득세
(3) PPh 23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4)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5) PPh 4. (2) 최종 분리과세

나. Sunset Policy - 자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제도

Gijzeling (Tax Hostage), 조세정의 확립을 목표로 Rp. 1억 이상 세금체납 및 탈세한 납세자를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최대 6개월 (1번 연장가능)간 인신구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신고서 미제출, 과소신고, 세금체납에 대한 행정적 제재 (이자, 과태료, 벌과금등) 를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와 신청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 해주는 것이 그 취지이다.
다만, 2015년에 한해 자진 수정 신고한것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납세자는 2015년도에 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 및 월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는 가산세 포함한 STP (벌과금 고지서)를 발행하고, 납세자는 자진신고 확인서, (수정) 신고서와 접수증, 납부서, 해당 벌과금 고지서를 첨부하여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에 국세청장은 6개월이내에 면제(감면) 결정문을 발급한다.
기 납부된 벌과금 등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청후 결정 통지 기간까지 체납 처분은 연기한다.

기각 결정되면 총 2회까지 재 신청이 가능하다.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것은 아니며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다시 실시 될 수 있다.

다. Tax Incentive 제도 - 투자자세액 공제제도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조세 혜택 제도로 Tax Allowance (조세감면) 및 Tax Holiday (조세 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Tax Allowance 는 소득세법 제 31A 조에 근거 하여 주어지는 소득세법상의 혜택 이고 (GR No.18/2015), Tax Holiday는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법 (UU25/2007, Investment Law) 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가지 조세혜택은 서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 수혜기업은 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1) Tax Allowance

신규개정된 GR-18 에서 Tax Allowance 의 요건은 기존의 구체적인 기준을 삭제하고 하기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의 요건을 발표하였다.

- 대규모 투자법인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을 하는 법인
- 높은 수준의 국내부품 (Local Contents) 를 소비하는 법인

GR-18 은 기존 GR-52에서 규정하였던 기존의 투자계획 대비 80% 이상의 실현요건 최소투자요건 (1조 루피아) 및 상업생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였다.

또한 GR-18 은 KBLI (Business Classification Field)를 기반으로 143개의 투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신규 타켓업종은 광물 제품의 가공을 위한 제련소 건설 및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제조업이다.

(2) Tax Holiday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내 투자 확대를 위하여 자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 (Tax Holiday) 규정을 재무부령 No.159/PMK.011/2015 (PMK – 159) 를 통하여 개정하였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산업부 또는 투자청에 Tax Holiday 를 신청 할 수 있다.

A. 선도산업 (Pioneer Industries) 에 속할 것.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창출 및 외부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아래에 명기된 분야를 선도산업으로 규정하고있다.

Upstream Metal
Oil Refinery
Organic Basic Chemical rooted in oil and natural gas
Machinery that produces for industrial machinery
Manufacturing based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신설)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rine Transportation (신설)
특별경제구역 (KEK) 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는 제조업 (신설)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방식 (KPBU) 를 사용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신설)

B. 최소 Rp. 1조 이상의 신규 자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통신업 및 정보통신업은 Rp.5천억 까지 가능)

C. 투자 계획 금액의 최소 10% 를 인도네시아 소재 은행에 예치하고 투자계획 실현 이전에 예치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

D. 2011년 8월 14일 이후 인도네시아에 설립 되었을 것.

라. 전자세금계산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LTO (대 납세자) 중심으로 Jakarta, Banten, Java, Bali 우선 시행 중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예정이다.

(1)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A. 관할세무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Activation Code) 와 Password 를 신청

B. 전자세금 계산서 어플리케이션 (e-faktur) 다운 / 설치를 하여, 납세자 계정을 생성, 전자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요청(https://efaktur.pajak.go.id/login)

C. 국세청 보고 및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절차는 먼저 납세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면, 국세청은 전자 세금계산서 일련번호에 따라 승인 코드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이를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

D. 부가가치세 신고 및 모니터링의 요령은, 납세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세청에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역을 상호 모니터링을 실시

(2) 종이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A. 국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며 재화의 수출 또는 용역의 수출은 국세청장 승인하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B. 서명은 전자 서명의 형태로 반드시 작성 : 승인코드 (QR 코드)
C. E –f aktur 를 통해 반드시 국세청 승인 후 발급 (업로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 보고절차 강화
D. 발급시점의 재무부 기준환율로 변환하여 루피아 표기가 의무화

마. 부채 자본비율 - Debt to Equity Ratio (DER)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세법은 부채/자본 비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며 실무적으로 BKPM의 투자승인 지표인 DER 을 300% 로 준용하여 왔다.
이에 재무부는 2015년 9월 9일자로 세무 목적상 DER 규정을 Regulation No.169/PMK.010/2015 를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년 세무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발표된 DER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거주중인 법인납세 의무자에게 적용이 되며, 하기적용 예외업종이 같이 발표 되었다.

A. 은행 / 창업투자회사 / 보험 및 재보험사
B. PSC. CoW, Mining Cooperation Agreements 및 DER 조항을 포함한 관련된 Agreement 에 따라 운영되는 Oil and Gas Mining 및 기타 Mining 회사 (단 계약서 / 협의서 상의 DER 규정이 만료된 경우 4:1 Ratio 를 따름)
C. 100% Final Tax를 적용 받는 납세 의무자
D. Infrastructure 산업을 영위하는 납세 의무자

동 규정은 부채자본 비율을 4:1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채금액을 자본금액의 4배 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부채의 금융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비용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
자본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손금비용은 손금부인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DER 계산시 적용되는 부채는 장기부채, 단기부채, 그리고 이자를 동반하는 매입채무 (Trade Payable which bear interest) 세가지를 뜻한다.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 및 제3자 부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DER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이란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는모든 항목 및 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한 무이자 부채를 뜻한다.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는 금융비용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대출이자
B. 대출금 관련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금액
C. 차입금 주선 비용

D. 리스관련 금융비용
E. 보증수수료
F. 상기 항목과 관련된 외화 환산금액

DER 계산시 세무상 1역년에 미달할 경우 부채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월별 평균 부채잔액을 사용하며, 자본금액도 동일하게 월별 평균 잔액으로 계산된다

.

완전 자본잠식과 같이 자본금액이 '0' 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금융비용이 손금 부인 될 수있다,
DER 이 4:1 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은 손금부인이 될 수 있으며, 4:1을 준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Final Tax 를 적용받는 업종과 적용받지 않는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DER 을 우선 계산하여 금융비용을 Final Tax 적용받는 소득과 적용 받지않는 소득에 안분 하여야 힌다.
그러나 특정 차입금이 비과세소득의 발생에만 관여되는 경우에는, DER 계산시 특정 차입금과 관련, 금융비용을 사전에 제외하고 DER을 계산하여야 한다.

해외사채 (Off Shore Private Loan)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해외사채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동 신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금융비용은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의 신고 여부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 / 감독 예정이다.

바. 수출 업체에 Tax Incentive 부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수출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정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국가 사무처는 2016년 1월 13일 이와같은 사실을 웹사이트 에서 밝혔으며, 새로운 규정은 국내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고 국내 환율의 변동성 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

이 감면정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경제정책 패키지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으며, 세금 감면은 수출업자가 국내 시중은행에 그들의 소득을 달러화와 루피아화로 장기간 예금했을시 이자에 대한 원천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개월 거치기간 달러화 표시 예금 계좌의 은행 이자에 10%의 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은행 이자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예금 거치기간이 늘어날수록 낮아진다. 인도네

시아 정부는 3개월 달러화 표시 예금 계좌에는 7.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6개월에는 2.5%를 부과한다. 6개월에는 2.5%를 부과하고 6개월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시중은행 22개사는 1개월부터 6개월 거치기간의 달러화 표시 정기예금에 0.8%의 이자를 지급하며 1년 거치 기간에는 0.9%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루피아화 표시 정기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는 1개월 거치 기간에는 7.5% 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 이후 3개월 거치 기간에는 5% 를 징수하고 6개월이상 초과시 0% 이다. 국내 시중은행은 루피아화 표시 예금에 평균적으로 7% (1개월) 7.3% (3개월), 7.1% (6개월), 6.9% (12개월) 의 이자를 지급한다.

중앙은행은 2015년 2월 기준금리를 7.5% 로 내린뒤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 최근 11개월만에 7.25% 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사.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정방향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세정은 재경부 산하의 국세청(DJP)에서 총괄하며, 국세청 산하의 하부조직으로 지방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산하의 개별세무서로 구분된다.
또한 세무서는 관할 납세자의 규모및 업종에 PMA (외투기업 세무서), LTO (대납세자 세무서) 등으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의 세정을 맡고있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의 하부조직으로 지방 국세국이 있으며 이의 하부조직으로 각 세무소가 있다.
세무서는 관할 납세자의규모 및 업종 등으로 PMA (외국기업 세무서), LTO (대규모 납세자 세무서)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전 산업분야의 특별 세무조사의 증가세로, 특히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에 대한 집중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과거 Profitable 기업에 대한 약한수준의 세무조사가 사라졌으며 엄격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하여 AR 팀에서 사전분석 및 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Letter 를 통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세수수입 목표 및 실제 세수수입 목표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Rp.1489조 예산을 책정하였고 세

무조사를 통한 추징 목표액을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2015년 목표액은 Rp.73.5조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재무부 (MOF)는 2015년 2월 13일에 Circular Letter No.SE–09/PJ/2015를 발표하여, 2015년 세무조사 전략 및 계획에 대하여 각 세무서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공격적인 세무조사 추징목표액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 (Special Tax Audit) 를 확대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각 AR (Account Representative) 팀과 세무조사팀은 최소한 1개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과세 제척기간이 2015년으로 종료되는 2010년도를 최 우선순위로 특별 세무조사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2011년이 과세 제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순 손실을 신고한 법인 / 전년대비 매출액 급감 법인
2). 원천징수, 월별 부가가치세등 정기 세무신고의 누락 또는 지연
3). 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별 평균이익율 지표 (14개) 100개 산업적용, 평균이하 법인
4). 인도네시아에서 환급을 신청한 모든 납세자
5). 인수, 합병, 분할, 청산, 폐업예정에 있는 법인

(2) 관련 법령

2015년 세무조사 전략및 계획에 관한 재무부 관보 Circular Letter No.SE–09/PJ/2015

(3) 제안 사항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의 세법을 준수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명한 재무회계 자료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하기와 같은 내부통제에 힘써줄 것을 권고한다.

1). 자금 흐름은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를 구분 사용하고 수출통관서류 (면장, 계약서, 인보이스) 와 외환송금자료를 일치.
2). 세금계산서 필요시 기재사항 (NPWP, 부가세액, 날자, 공급받는자 등) 및 상대방이 부가세를 실제 납부하였는지 확인.
3). 거래 상대방의 납세자 등록증 (NPWP) 및 일반 과세자 등록증 (PKP) 반드시 확인 .

아.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추세

(1) 현 황

과세당국에 의하여 해외 특수 관계자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의 이전을 부인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그 가액을 과세하는 제도를 이전가격 세제라고 한다. 해당 이전가격세제에는 거래 상황별 종류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3자 비교가능 거래법, 거래 순이익률 법등이 있다.

특수 관계자의 정의는 직접 / 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율, 지배/종속관계, 혈연 / 혼인관계가있는 사람을 뜻한다.
대상 거래의 범위는 유형 자산거래, 재고 자산거래, 생산설비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금전거래를 포함한다.

- 이전가격 조사 선정기준
  - A. 매출 혹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의 영향이 큰 회사
  - B. 거래 상대인, 특수 관계자가 저 세율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 C. 무형자산의 이관, 로열티의 지급, 용역대가의 지급, 이자지급등 특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
  - D. 같은 산업에 속한 타사에 비해서 낮은 영업이익률의 회사
  - E. 영업이익에 비해서 영업이익 이하 항목의 영향이 큰 회사
    (예 : 이자지급, 자산매각, 환차손실)
  - F. 무형자산 이전 유무와 무관한 사업재편등 비통상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한 회사
  - G.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
  - H. 상호합의 (MAP) 및 사전 가격승인 (APA) 소개
    - a. 국가간의 과세소득 배분 측면에서 양국간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MAP & APA 양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됨.
    - b. MAP 의 내용으로는, 권한있는 당국간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대응조정 (합의 의무 없음), 국내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VS. 조세조약에 의거한 상호합의 (동시 제기 가능)
    - c. 상호 합의만 신청한 경우 납세 유예는 적용되지 않음
    - d. 이의신청 기각, 소송 패소된 경우 미납세액의 50%, 100%가 가산세로 부과
    - e. 어느 하나에서 결론이 먼저 나오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기각 처리.

f. 사전가격 승인제도 (APA)은 이전가격 거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방 (UAPA) 및 쌍방 (BAPA) 가 있으며, 보통 APA 개시 연도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커버 기간은 3년.

g. APA 가 승인되지 못할 경우 관련일체 자료 반환 및 세무조사 근거 자료로의 활용은 금지.

(2) 관련 법령

2013년 7월 1일 발효된 PER– 22

(3) 제안 사항

이전가격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전가격 신고서 (TPD ;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재무정보가 일관성있고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수입 확보및 예산상의 이유로 APA 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APA 약정기간중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면제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돌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노동 정책

가. 근로 연령 제한

1995년 발효된 노동부 장관령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나, 실제 현장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규정으로 최근 외국인 인력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만 25세 미만, 55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를 불허한다.

근거 법령은 1995년 시행된 노동부 장관령 75호로,
(1) 근로자의 정상적인 퇴직 연령은 55세로 한정
(2) 근로자의 연령이 55세에 도달한 후 고용주가 고용을 원할 경우, 최대한도는 60세로 규정 (대학교수등 특정 전문직종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1항의 규정을 따른다.)

나. IUT (영구사업허가서) 법인의 RPTKA 진행제한

영구사업 허가서 미진행 법인의 경우, 일반 직책 근로자는 1년간 유효한 RPTKA를 제한하고 있다. (현장 기술직이 있는 업종에 한해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하다)

다. 외국인 근무 지역 / 범위 제한

외국인의 근무지역 범위 또는 근로 행위는 반드시 IMTA (근로허가서) 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라. 노동부 근로허가서 진행 구비조건

인도네시아에서 근로활동을 원할 경우, 4년제 이상의 대졸자로 직책과 관련된 졸업증명서 첨부하고, 5년이상 근무 경력증명이 가능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을 통해 직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본국 또는 현지영문 상해 / 생명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마. WAJIB LAPOR (인력사용 보고서) 의무화

모든 법인은 근무인력의 운용현황 및 계획을 WAJIB LAPOR를 통해 매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1인 채용시 최소 채용 현지인 인원수를 규제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이 규정변동이 매우 잦은 편이다.
때에따라 외국인 1인당 현지인 5명, 10명, 15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RPTKA 나 TA 01등의 업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바. 2015년 1월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자영업자등 모든 인도네시아 전 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기존 산재, 사망, 노후 보장이 아닌 전국민 의료보장 시행에 있고, BPJ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운영시스템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제반 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5. VISA 정책

가. VISA ON LINE 등록제

2014년 10월 1일자 이민국장 발표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법인 또는 사회기관은 이민청 온라인 등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10월 둘째주 부터 11월 세째주까지로 공표한 바 있으며, 등록완료 후 14일 이내에 확인 실사가 이뤄지며, 실사결과와 이민국 등록자료가 일치 할 경우에 On Line Telex 에 사용할 ID 및 패스워드를 교부한다.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이 거절되며, 이민국 전산시스템에 접속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스폰서 신청이 불가하다.

나. MERP 의무화, KITAS 임시 연장 불가.

2014년 10월부로 복수 출국허가서 (Exit Permit) 진행이 의무화 되었다.

이전의 공항 당일 출국허가제는 폐지되었다. 기존 KITAS 연장시 잔여 유효기간 부족으로 인한 임시연장이 금지되므로 KITAS 유효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다만, 기존 연장시 이민국접수 최소 3주전 (이민국마다 상이) 규정이 있었으나, KITAS 만료 2일전까지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지역 이민국마다 상이할 수 있음)

다. 신규 KITAS 진행시 근무지 및 거주지 실사

KITAS 상의 기재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이민국의 부정기 합동 단속시에도 실 거주지 확인이 이뤄지며, 미 일치시 이민국연행이 가능하다.

라. Domisili 요구

최근 이민국 부정기 합동단속시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거주지 증명서 (Domisili)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규 연장시에도 이민국에서 Domisili를 요구한다,

매월 지역 이민국에 외국인현황 신고가 의무화되고, EPO (영구 출국허가)시 7일내 출국해야 한다.

마. 현지 법인 형태별 외국인 채용 제한

기존에는 자본금 크기와 상관없이 현지 법인도 필요시 외국인 채용이 가능했으나, FA (Filma), UD (Usaha Dagang)는 채용이 불가하며, CV 의 경우 6개월 고용만 가능하다.

Ⅲ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

1. 투자환경
2. 노동분야
3. 부동산 / 소유권 분야
4. 금융 분야
5. 조세분야
6. 수출입 / 통관

1. 투자 환경

가. 경제 블록화와 인도네시아

(1) 현 황

2015년 10월 4일 발표된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타결 소식 이후에 인도네시아는 거대 경제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 무역부 장관이 2~3년 내에 TPP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등 국내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섬유산업은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과 내수, 수출 부진 등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TPP 체결로 인해 최대 경쟁국인 베트남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TPP 이외에도 현지 섬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EC(아세안경제공동체)등 타 통상협약 체결도 임박한 상황인 점에서, 인도네시아정부 및 관련업계의 긴밀한 대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산업 총생산량이 국가 GDP 중 약 2~3%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량의 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인도네시아 섬유업계는 최근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2014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돼 2015년 1분기에는 0.9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주된 원인은 전기료 인상, 루피아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및 최근 경기하락에 따라서 자바지역에 산재한 섬유업체들이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가 2015년 6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서부자바 반둥군에 산재한 섬유 제조업체 120곳에서 노동자 6,300명 이상이 해고됐으며, 조업시간이 주당 7일에서 3일로 단축되기도 하였다.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1분기 섬유산업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가 설정한 2015년 수출액 목표인 126억 달러의 18.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섬유산업 수출액의 약 60%가 의류제품(HS Code 61, 62, 63)이며,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 전체의 31%, EU가 16%, 일본이 9.6%, 터키가 5.1%, ASEAN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TPP 타결과 이미 체결된 베트남–EU FTA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최대 수출처인 미국, EU, 일본에서의 향후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 섬유산업 투자가 집중돼 일관 생산체계가 구축되는 베트남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미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아래 역내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섬유산업 최대 경쟁국인 베트남의 미국향 섬유제품 관세가 기존 17~32%에서 0%로 철폐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8~31%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4년 98억 달러에서 2020년 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섬유업계는 소요 원,부자재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체 산업의 60%를 봉제기업이 차지하는 등 원,부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가 최종 의류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향후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섬유산업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며, 인도네시아가 2~3년 내에 TPP에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된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들은 인도네시아가 TPP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불이익과 경제위기가 예상되고, 향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특히, 세계경제 4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권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으며, 경쟁국인 베트남의 상대적인 부상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하다.

TPP 발효시점은 2016년 말, 베트남–EU FTA 발효는 2017년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향후 각 발효시점을 타깃으로하는 기업들의 조달, 생산, 공급 체계 재편작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TPP 관련 섬유산업 이슈가 원산지 규정이다. 이번 TPP 체결에는 섬 유 기초자재부터 생산지에서 모두 제조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중국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한 의류제품에 관세혜택이 돌아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됐으며, 최근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 원자재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로인해 베트남은 봉제산업 뿐만 아니라 섬유소재 생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 제안 사항

미국 패션산업협회에 따르면, TPP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글로벌 의류 기업들은TPP 가입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것 이라고 한다.
(출처 : Vietnam News , 2015년 8월) TPP 불참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미, 대일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기반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인도네시아의 TPP 조기 가입이 절실한 이유이다.

나. 네거티브 리스트

(1) 현 황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인도네시아에 78억 3천만불을 투자하였고,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 투자국가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200여개의 한인 기업들은 100만명의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고용과 수출에서 인니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진출분야도 봉제, 신발등 노동집약에서 에너지/자원, 전자, 철강, 타이어, 화학, 유통, IT 컨텐츠 등 까지 전방위적 확산중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2억 5천만명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에 따른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지속 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신규진출 희망기업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들도 보호주의적 투자제한 리스트와 이의 변경으로 인해 투자를 제약받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투자 금지 15개, 조건부 투자허용 216개이나, 한국은 금지 2개, 조건부 개방 26개로 투자제한 업종 수가 인니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한국 투자가는 현지인과 공동투자 보다 한국인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내국인과 사업 운영사의 기준 차이가 커 공동투자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외국인 지분보유를 최고 95%, 67%, 55%, 51%, 49%, 30%, 20% 로 제한하는 업종이 상당히 있다. 이중 특히 30%, 49%, 51%, 55% 보유 제한 업종은 한국투자가에게 투자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1%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선출을 포함한 일반 사안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67% 확보시 정관 개정권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가가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증자) 하려면 67% 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방위 / 군수 업종 및 극소수의 특정 업종 (예 : 언론)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장기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67% 이상 허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관련 법령

네거티브 리스트 No.39 / 2014

(3) 개선 요청

A. 유통 산업

현재 인도네시아는 외국 제조업체가 상품을 수출 할 경우 현지 대리점 1곳에 독점 수입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정보가 부족한 외국 제조업체는 충분한 영업능력을 갖춘 독점 대리점을 선별하기 어렵고, 잘못 선정할 경우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제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유통과 마케팅을 하고자 하나, 100% 외투기업은 유통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품을 수입해도 판매를 못하면 법인설립의 의미가 없기에 리스트 개정 후 시장진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한국의료기기 지원센터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단독 현지법인 설립 사례가 전무하다.

FDI 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생산을 계획하는 기업도 직접 유통을 하지 못하고, 현지인 파트너를 찾아 합작 유통회사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투자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합작법인을 만든 경우에도 사업상의 견해 충돌시 소수지분 (1/3) 인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a. 유통의 투자제한 33.3% 를 100% 로 상향 조정하여, 외국업체의 현지법인 설립시 수입과 유통허가를 모두 부여.

b. 유통에 부수적인 창고업의 지분 또한 100% 로 상향

B. 영화산업

현재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은 MD 엔터, MVP 필름, Starvision, Falcon, Maxima, Merantau, Rapi 필름등 소수 제작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 제작사들이 제작 및 상영으로 벌어들인 내부 자금으로만 영화를 재생산함에 따라 예산의 한계, 흥행위주 유행 장르로의 쏠림 현상등이 발생하여 영화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창조적인 신진 제작사들도 외부자금을 지원받기 힘들어 획기적인 영화제작이 어렵고,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영화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경쟁 촉진으로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전체 영화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소수 제작사들이 주도하는 인니 영화계는 다양성 부족, 에산 한계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

a. 인니 영화제작에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 외국자본의 투입으로 건전한 경쟁속에 다양하고 Creative 한 영화가 제작될 때 인니 로컬영화도 발전하게 되며 인니 영화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헐리웃 영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b. 영화산업은 극장, F&B, 건설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문화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 가능.
c. 인도네시아 국민의 연간 영화관람 횟수는 0.22회로 중국 0.35, 태국 0.37, 필리핀 0.78, 말레이시아 1.90 등 타 국가 대비 매우 낮음.
   이는 영화관의 절대 수 부족과도 관계가 있어, 인구 백만명당 스크린이 인도네시아 2.9개로, 중국 (10.7), 태국 (12.6), 필리핀 (7.1), 말레이시아 (25.1) 등 인근 국가와 대비하여 매우 적은수준임. 현재 인도네시아내 영화관 수는 약 190개이나, 이중 50%의 극장이 자바섬에 위치, 70% 이상이 1급/2급 도시에 편중되어 있음.
d. 영화관 (상영)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 할 필요가 있음.
   영화관은 토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으로 로컬자본 (현재 메이저 3개) 만으로 전국적 극장 확대는 어려움.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증가로 문화생활 요구도 점증하고 있어, 영화관의 확대는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것.
   영화관 확대는 로컬영화의 제작 및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

C. 물류 산업

대부분의 물류 산업이 외국인 투자가 제한 (외국인지분 최대 33% – 49%) 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 및 사업 확대가 어렵다. 또한 각 물류 사업별 겸업금지로 물류사업 확대시 법인을 새로 신설해야 하고, 선진국과 같은 종합 물류기업 설립이 불가능하다.
최근 신규 항만운영허가 (BUP : Badan Usaha Pelabuhan) 발급도 제한되는 추세이다.

a, 물류 사업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의 완화
b, 항만사업 관련 인허가 제한 완화. 신규 항만운영허가의 제한은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선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

D, 인터넷 쇼핑몰

2014년 개정 투자제한리스트에 인터넷 소매시장이 추가되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도 기존의 전통적 판매채널 (시장, 마켓, 백화점 등) 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E-COMMERCE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소매시장 매출은 2009년 16억불에서 2013년 5.6억불로 5년 동안 연평균 30.4% 성장하였다.

a. 인터넷 쇼핑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허용

E, 온라인 거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상품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하고, 고품질의 상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자본도 참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온라인 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은 판매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유통채널 역할을 담당하여 창조경제 정착에 기여, 대규모 콜센터 운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물류등 인프라사업의 동반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a, 기프티콘등 전자 상거래 부수 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b,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지급시스템, 기프티콘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형성되고 있으나, 로컬파트너 없이 단독사업 추진시 사업자 모집에 제한을 받게되어 투자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저해를 받게 됨.

F, 기타 사례

a, 농업분야 투자중인 A사 (팜유, 커피, 사탕수수, 고무등) 는 정원 및 농장 추가

확대를 고려하던중 동 분야 인도네시아 정부의 30% 지분 제한조치에 투자 계획을 연기한 사례

b, 식품생산 B사는 인도네시아에 생산 및 유통기지 일괄투자를 고려하던중.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 분야 지분제한 33% 규정 및 유통을 담당할 현지 JV 파트너의 물색등에 발목이 잡혀 투자계획 연기

c. C사는 화공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회사임. 보다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Oil Storage Project를 기획하고 있었으나 동 분야 75% 지분 제한 및 Pertamina 사와의 Joint Operation 의무조항에 걸려 Project 좌초.

상기사례는 많은 애로사항중 일부이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Energy, Mining, Construction, Retail, 주류유통, 식당경영, ICT, 교육, 그리고 제약등의 분야에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분제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Negative List 의 제정 / 개정 전에, 코참등 Foreign Economic Community 와 충분한 사전조율 및 협의를 하여 같이 손잡고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다. 인프라 분야

세계 경제포럼의 2013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 애로 요인으로 응답자의 9.1%가 '인프라공급부족' 을 꼽아 '부패' (19.3%), '비효율적인관료제' (15.0%)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경제대국이나 2013년 인프라 경쟁력(61위)은 인근 태국(47위)과 말레이시아(29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철도(44위)를 제외하고 도로(78위), 항구(89위), 전력(89위)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취약한 수준 인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액은 GDP의 3~4% 수준에 불과하여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이전 수준(7%)을 회복하지 못하고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계획부(BAPPENAS)에 따르면 2012년 인프라 투자금액은 385.2조 루피아(409억달러)로 GDP의 4.5%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비중은 7% 이상으로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소득 및 도시인구 증가등으로 향후 8년간(2013년~2020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수요는 약2,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 및 도로부문이 전체수

요의 약 63%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2012년 3,592달러에 2018년 5,569달러로 55%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 소득 3,600달러 이상 인구는 현재 4,500 만명에서 2030년 1.7억명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인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2,400만명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율도 현재 50%에서 2025년에는 70%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역임한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연계성 비전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고,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을 위한 역내 연계성 증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차원의 인프라 수요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프라 투자가 자바와 수마트라지역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낙후되어있으나, 기존의 자바지역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벗어나 지방 소도시의 경제성장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인프라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에 따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중점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4,012조 루피아(4,7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MP3EI) 의 내용은
① 권역별 성장 잠재력 제고,
② 지리적 연결성 확대,
③ 인적자본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의 3가지를 주요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최우선 과제는 인프라개발로 전체 투자계획 금액의 48.3% (1,936조 루피아)가 인프라 관련 투자에 배정되고 부문별로는 인프라 투자금액중 38.1%가 전력.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로(19%), 철도(18.3%), ICT(13.5%), 항구(6.6%) 등의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다.

아울러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인프라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MP3EI의 투자 재원 조달방법중 PPP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달한다.
PPP 활성화를 위해 토지 수용법제정, 세제혜택 제공, PPP 가이드북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PPP 사업의 진전이 더딘 상황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역량 및 자금조달 역량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통신부문포함) 투자액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 평균

19.8% 증가하여 2015년에는 691억 달러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철도(70.9%), 공항(32.2%), 항구(30.2%) 분야의 인프라 투자액이 해당 기간동안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6년 투자액은 800억 달러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약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도서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나, 교통인프라 미비로 물류비가 GDP의24~27%를 차지(세계평균7~10%)하고있다.

2016년 1월 1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제 3호를 통해서 225개 인프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발표하여 (Perpres No. 3 / 2016) 정부의 인프라 개선의지를 보여주었다.

225개 프로젝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Toll road projects
- Non-toll road projects
- Facilities for inter-city trains
- Inner-city train infrastructure
- Airports revitalization
- New airports development
- Other strategic airports
- New seaports and capacity improvement
- One million houses
- Oil refinery projects
- Gas pipe and LPG terminals
- Energy infrastructure from waste
-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 Sewerage system / wastewater management
- Flood wall
- Cross-border postal facilities
- Dams
- Broadband coverage
- Technology and science facilities
- Prioritized Industrial Area / Special Economic Zones
- Tourism
- Smelter facilities

- Agriculture and maritime facilities
- Electricity infrastructure

A. 도 로 / 교 량

(1) 현 황

도로는 인도네시아 화물 운송의 70%, 승객운송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교통 인프라이다.

최근 중산층 확대에 따른 자동차 보유 증가로 도로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인구 천 명당 차량대수는 80% 증가하였으나 도로망은12% 확대되는데 그쳤으며, 2010년에서 2016년 동안 자동차 판매는 약 2배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포장률은 60% 미만으로 85% 이상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 관할국도에 비해 지방정부 관할도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여 국도 포장률은 거의 100%에 이르는 반면 주(province) 및 시(district) 관할 도로의 포장률은 각각 80%, 55% 수준이다.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많은 지역단위 기관들은 기술력, 특히 수요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정부가 신규도로 건설에 비해 기존도로의 유지 보수에는 소홀하여 손상된 도로 복구에 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2) 관련 법령

도로유지 보수, 표지판, 자동차에 관한 정부 규제 No.43 / 1993

B. 철 도

(1) 현 황

철도는 다른 인프라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편이나, 철도 이용객 수가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0.6% 증가하는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승객 및 화물운송 수요가 정체 되어있다.

인구 100만명당 철도길이는 11마일로 말레이시아, 태국등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철도의 약 70%만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열차의 2/3가 20년 이상 사용되어 노후화 되었으며 철도의 대부분이 차축하중이 낮은 단선 철도로 구성되어 수송용량이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철도 인프라 부족등으로 인해 매장된 석탄의3% 미만이 생산 및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석탄개발에 관심이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광산과 수출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물철도 건설사업중 하나는PPP 방식으로 추진되고있는 21억달러 규모의 칼리만탄 Puruk Cahu Bangkuang–Lupak Dalam 석탄운송 철도 프로젝트이다.
동 철도건설로 계절변화에 상관없이 1년내내 해당 지역의 원활한 석탄 운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Puruk Cahu 주변에서 채굴된 석탄은 민영도로를 통해 바지(barge)항으로 운송되고 있으나, 건기에는 낮은 수위로 인해 바지항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는 2013 – 2020년동안 Banjarmasin–Pelaihari–Batakan 구간등10개의 PPP방식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할 계획이다.

(2) 관련 법령

철로, 철도 등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관한 법 No. 23/2007

C. 항 구

(1) 현 황

인도네시아는 군도국이라는 특성상 해상운송이 중요하나, 컨테이너 적재공간 및 하역장비 부족, 물동량 급증등으로 화물처리에 오랜시간이 소요되어 항구 인프라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항구 인프라미비는 높은 물류비용, 낮은 수출경쟁력, 지역간 가격격차등의 원인이 되고있다. 자카르타와 수마트라간 국내 해상운송 비용이 자카르타와 싱가포르간 국외 해상운송 비용보다 4~5배 높은 실정이다.

자카르타의 띤중 쁘리옥 (Tanjung Priok) 항구는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로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고 있다. 동 항구의 최대 적재용량은 500만TEU이나, 2011년 560만TEU, 2012년 620만TEU를 소화하는등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만기업인 펠린도(Pelindo) II는 딴중 쁘리옥항구의 포화상태 해소를위해 북부자카르타의 깔리바루(Kalibaru) 항구개발을 추진중이다. 2013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완공시 적재 용량이 1,300만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관련 법령

교통, 선박의 안전 그리고 항구에 관한 법 No. 17/2008과 항구 유지 보수, 확장, 사용과 부대시설에 관한 정부 규제 No. 69 / 2009의 개선 필요

D. 공 항

인도네시아의 공항 이용객수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11% 증가한 8,800만명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 개발등으로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비해 인프라 확충이 부진하여 주요 공항은 포화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공항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2011년 이용객수는 5,100만명을 기록하여 연간 수용가능 인원인 2,200만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소수의 공항만이 국제선 항공기를 위한 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022년까지 45개 공항의 건설 및 확장을 계획하고있다.
우선 2017년까지 24개의 공항이 건설 될 예정이며, 공항 1개당 최소 2천억 루피아(2,120만 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프로젝트는 5억달러 규모의 족자카르타(Yogyakarta) 아디수찝또 (Adisutjipto) 국제공항과 11억달러 규모의 까라왕(Karawang) 국제 공항등이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도 화물청사의 통합 및 신규건설, 주차시설 및 도로 건설등을 포함하는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다. 공사는 28개월 소요 될 예정이며 완료시 연간 수용인원이 6,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항 인프라 확충에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2010 – 2014PPP 가이드북에는 8억달러 규모의 서부자바 꺼르따자띠(Kertajati) 국제 공항건설등 7개의 공항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다.

E. 전 력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전력 보급률은 70% 수준으로 자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낡고 비 효율적인 송,배전 시스템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전력 손실률은 2012년 9.4%를 기록하였다.
전기요금 인상등 전력부문의 개혁추진이 지연되면서 전력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력 인프라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수요충족 및 MP3EI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용량을 55,345MW 증가시키고 49,229km의 송전망 416,906km의 배전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수요는 연

평균 8.5%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 인프라투자에 소요 될 금액은 발전(678.15억달러), 송전(149.28억달러), 배전(134.61억달러) 등 총 962.0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여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점점 활발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발전용량에서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5%에서 2015년에는 58.8%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중 하나는 중부자바의 자와떵아(Jawa Tengah)발전 건설 사업으로서 발전용량은 2,000MW, 투자금액은 30조루피아 (33억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로 인한 손실 위험에 대한 보증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있다.

(2) 관련 법령

전력 공급과 전기료는 광물에너지자원부 (ESDM) 와 인도네시아 전력청 (PLN)이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7/2010 에 명시되어 있다.

F. 수처리/위생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20%대에 불과하며 열악한 위생시설은 관광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59억달러 규모의 수처리 및 위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것으로 추산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에 수처리 및 위생시설 확충에 3.15조루피아(3.2억달러)를 투자 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13.3억달러 규모의 서부 스마랑 상수원 시설, 2.9억달러 규모의 남부 발리상수원 시설 구축등이있다.

(2) 관련 법령

물 공급, 수질관리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 No.7 / 2004

G. 개선요청

(1) 토지수용법 발효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인도네시아는 토지 수용법 부재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외국정부와

기업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따라 2012년12월 '공익목적의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법률에서 명시한 '공익목적' 에는 국도, 고속도로, 철도, 상하수도, 항구, 공항 등의 인프라건설이 포함된다.

동 법의 발효로 토지 수용절차 및 기한이 구체화됨에 따라 인프라투자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MP3I계획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수용법은 인프라사업 추진을위한 토지 수용기한을 최대 583일로 제한하고 토지 소유주의 항소절차 및 기한등 토지 수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토지 수용리스크를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부담하는 토지수용 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사업개발비 변동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으며, 정부와 양해계약(ConcessionAgreement)을 직접 체결하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확실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2) 인프라 관련 정책 불확실성 잠재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부재등 제도적 역량의 미비는 고질적인 인프라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특성상 장기적인 정책성 일관성이 요구된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2014년이후 65개 미 가공광물 수출금지, 석탄생산 쿼터제도입등은 항구, 철도등 광업관련 인프라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이의 개선을 요청한다.

라. 인도네시아 법인 절차 설립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형태별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Public Works Representative office, BUT) 등이 있으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투자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 PMA(Penamanan Modal Asing)와 내국인 회사 PMDN(Penamanan Modal Dalam Negerie),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내용
(1) 법무부 상호 신청	법무부에 상호 가능여부 확인
(2) 투자조정청의 투자승인서 (Izin Prinsip)	투자승인신청서, 본사 정관 영문 공증본, 본사 영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여권 사본등 제출
(3) 정관 작성(Akta Notaris)	정관 작성해 공증(투자조정청 승인 진행 서류, 정관,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서류 필요)
(4) 소재지 증명서(Ijin Domisili)	동사무서로부터 거주자 증명 확인서 발급
(5) 세적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번호(VAT number)	세무서에NPWP 및 VAT 등록신청서 제출
(6)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은행계좌신청 및 자본금 납입 (보통 수권자본금의 25% 정도)
(7) 법무부 승인(Pengesahan)	정관 및 각종 법률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해 법무부 승인 진행
(8) 임시사업자등록증 신청 (무역부; TDP)	신청서

상기 임시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본허가는 Izin Usaha로 투자조정청에 신청해야하며, 라이센스는 수입허가(API-U), 통관인식번호 (NIK), 토지 매입/사용 허가, 환경, 건축, 공장 허가 등으로 회사별로 영업활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약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인설립 절차 및 사업본 허가, 라이선스 취득은 준비서류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있어 법인 설립 대상 지역의 특성 및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 No. 25/2007

(3) 제안 사항

인도네시아 투자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One Stop Service 를 꾸준히 개선 발전시켜 말 그대로 One Stop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온라인 및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열악한 IT 인프라로 인한 업무지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이의 개선을 위한 IT 인프라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마. 중앙 / 지방 정부간 정책 일치성 보장

(1) 현 황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정부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규제들로 인해 투자자들이 많은 애를 먹고있다. 이로인해 재화및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고, 투자활동이 저해된다. 이러한 규제들과 관련, 몇몇 지방 자치정부는 오히려 중앙정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왜냐하면 법률적 기반이 없는 지자체 이름으로 새로운 조세의 부과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세들은 중앙정부의 세금과 많은부분 중복되어 이중과세의 폐해를 낳고 있다. 이중 규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뇌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불일치는 정책조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오히려 상쇄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정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더 큰 문제가 되고있다.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많은 제도나 법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것은 이권과 관련한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주지사, 시장, 군수 모두 투자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의적인 해석의 결과 본래 목적인 신속한 인허가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지방정부에 관한 법 No.22.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균형에 관한 법 No. 25, 2004년 No. 32/33, 2005년 No. 3, 2008년. 그리고 주지사 역할을 재정의하는 2010년 No.19등

(3) 개선 요청

종전에는 지역투자와 관련 투자청및 지방투자청 두 곳의 허가만 득하면 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인허가, 투자업무 및 기존의 투자청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가 개입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산업, 무역, 경제부문의 자본투자 및 승인에 있어 수많은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허가 창구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바. 중앙정부의 중재 역할 중요

(1) 현 황

투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업계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상충을 어떻게 조정 할 것인가이다. 업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창출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원할 것이다. 반면, 지역 사회는 투자되는 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는 업계의 목적과 상충되기도 하기때문이다.

업계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는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다.

(2)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1999년 No. 22) 의 역할에 대한 규정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3) 개선 요청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그리고 업체와 지방정부간의 충돌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투자유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어 투자가들의 혼선을 없애주길 바란다.

사. 외국인 입찰 참여의 제한

(1) 현 황

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공항, 발전소, 사회 간접시설의 건설 입찰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법 또한 준수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을 제시할 때, 공정한 입찰 심사를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상 입찰경쟁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들고 로비를 하는 업체들이 생기는등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다. 입찰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등록비, 서류작성 등에 드는 비용등이 그 예이다.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며, 법률 절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 프로젝트 및 입찰 관련 법령 No. 80/2003 에 따라 외국기업은 1000억조 루피아 이상 정부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계약자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00억 루피아 이상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으로 최소 100억 루피아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정부 프로젝트 및 입찰 관련 법령 No. 80 / 2003

(3) 개선 요청

현재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정부의 입찰 규제로 인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아의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암묵적으로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대부분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외국기업의 입찰금액 제한조치의 단계적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자정부 조달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요소인 온라인 입찰 시스템의 공정성을 100%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요청한다.

2. 노동분야

가. 해고에 따르는 각종 보상제도의 문제점

(1) 현 황

노동의 단절, 즉 해고에 따르는 퇴직보상금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10년 근속직원의 해고시 해고보상금과 근속보상금이 월 급여의 22배(사 용자 귀책사유 : 약22배, 근로자 귀책사유 : 약 13배)에 달하는데, 이는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동 기간 근속 시 퇴직 보상금은 월 급여의 10배 정도, 베트남은 최대 퇴직수당이 6개월 급여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기존 노동법은 10년 근속시 노동자의 퇴직보상금을 1년치 연봉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있다.

퇴직보상금뿐 아니라 노동법에는 고용주에 대해 그 노동자가 12개월 이내의 병가시 해고 불허, 법률적 소송이나 형사절차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6개월이내에는 해고를 불허 할 뿐 아니라 이 기간내에 가족 생계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급여는 미지급).

또한 자진 퇴사자에게 퇴직(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 사용 연차휴가,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경비,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와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사항등이 포함 된다.

야간교대 근로자의 경우 교대 근무시 영양가 있는 음식 및 음료 제공과 작업장내 도덕 및 안전 유지와 출 퇴근하는 여자근로자를 위해 출, 퇴근 교통수단 제공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는 사주들로 하여금 정규 노동자 채용보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더 선호하도록하는 원인이 된다.

(2) 관련 법령

1992년 노동법 제 3조 (UU No. 3 Tahun 1992),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조항 (Jamsostek)

(3) 개선 요청

2003년 발효된 노동법 13조 (Law No.13 year 2003) 에는 해고와 퇴직 보상

에 따른 규정이 있다.
임금 및 고용에 관한 규칙들이 기업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없어보인다.
국내 기업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주 6일 근무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나 주 5일 근무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규정을 여전히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규정위반자 해고시 근속보상금과 손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항 (161 조) 및 형 확정자 근속 보상금과 손해 보상금 지급 (160조 7항) 에 명기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해고자에게 2배 혹은 1배로 나누어 지급되게 되어있는 해고 보상금과 근속 보상금을 통합해서 단순하게 축소하는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정식직원의 고용관계 해지시 사용자측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여 계약직원 채용 혹은 외주업체 이용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지어 근로계약서, 사규, 취업규칙등 규정 위반자 혹은 범법자로 형이 확정된 자에게도 지급하게 되어있는 점은 명백히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중인 BPJS 전면도입으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중 산재보험 (BPJS KETENAGA KERJAN), 건강보험 (BPJS KESEHATAN) 두가지는 비교적 정착 되었으나 아직도 연금보험 (BPJS PENSION) 부분은 계속 연기되고있다.

정부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비용 항목을 인정해 주는것이 시급하다.

나.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1) 현 황

최저 임금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7.6% 성장, 강성 노조의 등장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표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은 최저임금이 계속하여 자카르타주와 수도권 지역에서 4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최소 60개 기업이 임금이 낮은 중부 자바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부 자바 또한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로 이전후에도 생산비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최저 임금 변동 추이(자카르타 지역)

(단위 : 천 루피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저임금	900.6	972.6	1,069.9	1,118	1,290	1,529	2,200
증가율	9.95	8.0	10.0	4.5	1.54	18.5	44%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한인기업 지역 중심 2016년 시, 군단위 UMK최저임금 (한인포스트)

주	시,군(업종)	2014년	2015년	2016년	인상율%
Riau 주	바땀시(Kota Batam)	Rp. 2,422,092	Rp. 2,664,302	Rp. 2,994,111	13
Jakarta	자카르타시(Jakarta)	Rp. 2,441,301	Rp. 2,693,764	Rp. 3,100,000	15
반튼	땅그랑시(Kota Tangerang)	Rp. 2,444,301	Rp. 2,730,000	Rp. 3,043,950	12
	땅그랑군(Kab. Tangerang)	Rp. 2,442,000	Rp. 2,710,000	Rp. 3,021,650	12
	찔레곤시(Kota Cilegon)	Rp. 2,443,000	Rp. 2,700,050	Rp. 3,078,058	14
	세랑시,군(Kab. Serang)	Rp. 2,166,000	Rp. 2,700,000	Rp. 3,010,500	12
서부자와	반둥시(Kota Bandung)	Rp. 2,000,000	Rp. 2,310,000	Rp. 2,626,940	14
	반둥군(Kab. Bandung)	Rp. 1,735,473	Rp. 2,001,195	Rp. 2,275,715	14
	Kabupaten Bandung Barat	Rp. 1,738,476	Rp. 2,004,637	Rp. 2,280,175	14
	Kota Cimahi	Rp. 1,569,353	Rp. 2,001,200	Rp. 2,275,715	14
	버까시시(Kota Bekasi)	Rp. 2,441,954	Rp. 2,954,031	Rp. 3,327,160	13
	버까시시 전자,기계 (Kota Bekasi sektoral 1)	Rp. 2,814,108	Rp. 3,397,035	Rp. 3,788,700	12
	바까시시 봉재 (Kota Bekasi sektoral 2)	Rp. 2,686,149	Rp. 3,249,434	Rp. 3,623,750	12
	버까시군(Kab. Bekasi)	Rp. 2,447,445	Rp. 2,840,000	Rp. 3,261,375	15
	버까시군 제 1 군 (Kab. Bekasi sektoral 1)	Rp. 2,814,562	Rp. 2,927,000	Rp. 3,263,605	12
	버까시군 제 1 군 (Kab. Bekasi sektoral 2)	Rp. 2,692,190	Rp. 3,124,000	Rp. 3,484,372	12
	보고르시(Kota Bogor)	Rp. 2,352,350	Rp. 2,658,155	Rp. 3,022,765	14
	보고르시 섬유,봉제 (Kota Bogor sektoral 2)	–	–	–	

	보고르군(Kab. Bogor)	Rp. 2,242,240	Rp. 2,590,000	Rp. 2,960,325	15
	까라왕군(Kab. Karawang)	Rp. 2,447,445	Rp. 2,957,450	Rp. 3,330,505	13
	까라왕군 섬유,봉제업 (Kab. Karawang sektoral 2)	–	Rp. 3,249,575	–	
	수까부미시(K. Sukabumi)	Rp. 1,350,000	Rp. 1,572,000	Rp. 1,834,175	17
	수까부미군(K. Sukabumi)	Rp. 1,565,922	Rp. 1,940,000	Rp. 2,195,435	14
	수까부미군 섬유,봉제 (Kab. Sukabumi sektoral 1)	–	–	–	
	수방군(Kab. Subang)	Rp. 1,577,959	Rp. 1,900,000	Rp. 2,149,720	14
	Kabupaten Sumedang	Rp. 1,735,473	Rp. 2,001,195	Rp. 2,275,715	14
	Kota Depok	Rp. 2,397,000	Rp. 2,705,000	Rp. 3,046,180	13
	Kabupaten Cianjur	Rp. 1,500,000	Rp. 1,600,000	Rp. 1,837,520	15
	Kabupaten Garut	Rp. 1,085,000	Rp. 1,250,000	Rp. 1,421,625	14
	Kabupaten Tasikmalaya	Rp. 1,279,329	Rp. 1,435,000	Rp. 1,632,360	14
	Kota Tasikmalaya	Rp. 1,237,000	Rp. 1,450,000	Rp. 1,641,289	14
	Kabupaten Ciamis	Rp. 1,040,928	Rp. 1,131,862	Rp. 1,363,319	21
	Kota Banjar	Rp. 1,025,000	Rp. 1,168,000	Rp. 1,327,965	14
	Kabupaten Majalengka	Rp. 1,000,000	Rp. 1,245,000	Rp. 1,409,360	14
	Purwakarta	Rp. 2,100,000	Rp. 2,600,000	Rp. 2,927,990	13
중부자와	스마랑(Semarang)	Rp. 1,423,500	Rp. 1,685,000	Rp. 1,909,000	14
	살라띠가Salatiga	Rp. 1,170,000	Rp. 1,287,000	Rp. 1,450,953	13
	보요날리 지역(Boyolali)	Rp. 1,116,000	Rp. 1,197,800	Rp. 1,403,500	18
동부자와	수라바야시(Surabaya)	Rp. 2,200,000	Rp. 2,710,000	Rp. 3,045,000	13

** 상기 최저임금인상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최저임금은 매년 개정되어 발표된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상회했는데, 이는 경쟁력이나 지역개발 같은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이 정작 노동자의 생산성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령 (PP 78)은 최저임금 산출 시 생산성과 인플레를 감안하여 산정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정부의 긍정적인 변

화로 보여 주목된다.
새로운 최저임금 산출 방법은 당해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인플레이션 + 당해년도 국내 총생산 성장율) 로 정해진다.

(2) 관련 법령

노동, 노동생산성 및 임금에 관한 법 No. 13 / 2003

(3) 개선 요청

시군 최저임금 (UMK)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성향에따라 노사정 위원회, 정부, 근로자, 경영자로 구성된 임금 위원회의 3자합의에 우선하여 예측불허로 결정되는 일이 많다.
또한 UMK 는 항상 적정생계비 (KHL)보다 높은수준에서 결정되는 관행때문에 KHL 의 구성요소인 생필품 가격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다.
KHL 구성요소인 생필품의 가격은 적어도 5 – 10년간 물가수준 관찰 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UMK 는 최대한 KHL 또는 그 이하로 책정됨이 타당하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존중하여 최저임금이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이후엔 이를 번복하지않는 사회적합의가 아쉽다.

최근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의 봉제 및 신발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기업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에대한 신규정이 올해 지역별 최저임금 책정시 시행초기여서인지 지역별로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있는 지역이있다.
예를들어, 신 규정에 따른 급여 인상율은 대략 11.08%인데 (인플레이션 6.38% 와 경제 성장율 4.7% 기준) 자카르타는 14.8% 올랐고 중부자와 뿌르발링가는 25% 상승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노사정 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정준수가 요망된다.

다. 낮은 노동생산성 및 숙련도

(1) 현 황

중국, 태국, 베트남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는 주 40시간 근무규정 및 시간외수당 의무 지급을 규정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생산성의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시간

외 수당의 지급 때문에 오히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게되고 이는 고스란히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2) 관련 법령

노동, 노동생산성 및 임금에 관한 법 No. 13/2003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구 경쟁력 강화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풀어야 하는 숙제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런점에서 숙련공 양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대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산업부, 교육부, 봉제분야, 신발분야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한국기업가, 한국의 봉제 및 신발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인력 양성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등이 고려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의 봉제 및 신발분야 기업들은 뛰어난 숙련공들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차기 투자 유치산업으로 특정산업을 선정할 경우, 미리 숙련공들을 양성하는 제도를 병행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 잦은 노동 파업

(1) 현 황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잦은 요구사항은 종종 데모 혹은 노동파업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측으로 하여금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투자 행위나 생산활동의 위축과 붕괴를 가져 온다.
노동분쟁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 자본을 투자하는것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2000년 노동법 제 21조 (UU No. 21 Tahun 2000), 노동조합에 관한 법령

(3) 개선 요청

ILO협약이 입법화됨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해졌다.
10명의 근로자 만으로도 노조결성이 가능해졌고, 노조 등록의 의무가 신고로 전환되었다.

또한 복수 노조 설립이 작업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장 이상의 수준 에서도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정부가 공인한 노조총연맹 단체인 SPSI만이 전국단위 노조총연맹으로 존재했다면 새로운 법령 하에서는 모든 조직적 수준 에서 단위사업장을 뛰어넘는 노조간 연대가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강성노조의 출현과 잦은 불법 데모 및 파업을 가능하게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노동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잦은 파업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항상 경영자측은 자본가인 " 갑 " 이며 노동자측은 사회적인 피해자인 " 을 " 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은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결성은 노동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이 따라주는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조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노사정 위원회의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실행되도록 노동법 개정등 제도적인 지원을 권고 한다.

마. 고급 인력 양성 및 고용불안 해결 시급

(1) 현 황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총 인구대비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높은 소위 '인구 보너스(66.5%)'를 향유하고 있다.

인구 보너스는 2010년 66.5% 수준에서 2028~2031년에는 68.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에 인도네시아 인구는 2010년 2억 3000명에서 28% 증가한 3억명에 달할 것이며, 3억500만 명(전망치) 중 생산활동 참여연령은 전체 인구의 68%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노동자중 46.95% 정도가 초등교육만 받았고, 2013년 보스턴 컨설팅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 인도네시아인의 88%는 정도는 고등교육(일반 대학 및 전문대)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러시아,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매년 5만명 정도의 기술직을 필요로하지만 실제 기술직 졸업자는 3만명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기술직 부족 비율이 7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게되면 역내 국가간 상품, 투자, 노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의 의료, 회계, 법률등 고급 인력이 유입되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낮은 임금의 인력 사이에 인도네시아 노동인구의 경쟁력 배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마케팅과 생산/제조분야에 있어 중간 관리자급이 부족한 것과 역량있는 숙련 노동자층이 부족한것은 노동분야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불안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임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인 수실로밤방 술리스토 회장은 투자조정청 자료를 언급하며 2013년 1분기 외국인 투자금액은 80억달러로 36만건의 고용이 발생했고, 2014년 1분기에는 투자금액이 92억 달러 정도였으나, 고용 건은 26만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취업인구는 약 1억1000만 명이나, 이 중 55~60%는 비정규 또는 비공식 고용으로 분류되는 등 고용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 인구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8월)*
노동 인구	116,527,546	119,399,375	118,040,000	118,190,000
취업인구	108,207,767	111,281,744	110,800,000	110,800,000
미취업인구	8,319,779	8,117,631	7,240,000	7,390,000

주 : 2013년은 8월까지만 발표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2) 관련 법령

노동, 노동생산성 및 임금에 관한 법 No. 13 / 2003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앞서 건의하였듯이, 정부와 투자업체간의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서로 협의하여 양질의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1) 현 황

2015년 1월 14일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부 장관령 15호를 발표하였다.
(kepmen No.15, 2015) 그 내용으로는, 특정업종의 외국인 고용허가 직책은 총 46개로 제한하며, 등재이사 8개 직책은 연장가능하다. 일반직책 38개는 2년 후 연장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년후에는 동일 직책 및 동일회사 사용불가로 인한 전문 외국인고용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장기적인 전문직종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업종에서는 자연적으로 투자관련 기피현상이 매우 염려된다.

(2) 관련 법령

Kepmen No. 15, 2015

(3) 개선 요청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한정하는 노동부 장관규정은 추후 많은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동집약적 업종등 특정업종의 경우 전체 현지 종업원당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율이 0.5%의 미만에 불과하고 이 인원들이 현지 종업원들의 기술전수 (Knowledge Transfer) 를 순조롭게 마치려면 특정 기간제한을 두는것이 과연 인도네시아의 투자 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재 검토 하여 주기 바란다

사. 최근 노동부 장관령 개정

(1) 현 황

2015 년 9월 3일 코참은 인도네시아 경총(APINDO) 주최의 노동부 장관령 16호 설명회에 참가하여 법 제정 취지를 공유하였다.

완화 / 폐지된 조항은, 대졸학력 증명, 인니어 구사가능 요건, TA-01이고, 강화된 조항은 하기와 같다.

- 외국인 1인당 현지인 기술전수자 (Pendamping) 최소 10명 고용
- 온라인신청 의무화
- 사용주의 NPWP, BPJS가입 등 증빙 추가 등
- 이사, 감사의 정관 제출 추가
- 연령 제한의 비공식 존재. 외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의 개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2015.10.23. 제정 시행)

1). 외국인력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 규정 폐지(제3조 삭제)
2). 국내투자 형태의 외국인력 사용주는 감사직책에 외국인력 사용 금지(제4A조신설)
3). 임시 RPTKA(외국인력 사용계획서)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16조 개정) –

상업영화 제작, 감사(audit) 및 품질관리 또는 1개월 이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대한 감독(inspeksi), 기계,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또는 사업시험기간 동안의 생산업무에 한정

4). 국외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luarnegeri) 감사, 이사등 임원에 대한 IMTA (외국인력고용허가) 의무 폐지(제37조 제1항 개정)

5).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루피아화 환산폐지(제40조 제2항 개정)

6). 임시 IMTA에 해당하는 업무축소(제46조를 임시 RPTKA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Indonesia) 이사, 감사등 임원 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설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 (keputusan pengesahan)이 발급된 이후부터 IMTA를 소지 할 의무를 가진다(제66조 일부 개정)

8). 동반자 인도네시아인 근로자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 전수에 관한 상세 총국장 결정(keputusan Dirjen)으로 규정(제66A조 신설)

9). 감사, 이사 직책 및 폐지된 임시 IMTA 규정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외국인력 사용보상금
(DKP–TKA)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 신설(제11장 신설)

(2) 관련 법령

Permenaker No. 16 Tahun 2015=〉Permenaker No. 35Tahun 2015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투자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시각으로 볼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 노동자에게 지식과 업무기술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법규를 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회사에서 외국 인력으로부터 지식과 업무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한다면 연령제한이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 반대일 것이다.

아. BPJS 전면 시행

(1) 현 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Jamsostek 사회보장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였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복지요구 증대에 관한 대선공약의 일환 및, 노동운동 활성화에 따른 노동계 요구가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점, 그리고 민간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사회보험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개 념
  1) BPJS (Badan Penyelengara Jaminan Social)
  2) BPJS Ketenaga Kerjaan
  3) BPJS Kesehatan
  4) JAMSOSTEK (Jaminan Social Tenaga Kerja)
  5) JAMINAN SOCIAL 〉 ASURANSI SOCIAL
  6) IURAN
  7) MANFAAT

(2) 근거 법령

UU No 40/2004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UU No 24/2011 BPJS
UU No 3/1992 JAMSOSTEK 폐지
PP No 14/1993 Program Penyelenggaraan JAMSOSTEK

보장별 보험료 금액 및 가입절차 등 규정
2013년 9차 개정 후 아래 개별 PP들 에 흡수

PP No 44/2015 Jaminan Kecelakaan & Kematian
PP No 45/2015 Jaminan Pensiun
PP No 46/2015 Jaminan Hari Tua
PerPres No 109/2013 Jaminan Kesehatan
PP No 86/2013 Sanksi Administratif
Permen, Pedoman dll

(3) 연 혁

- 47년 법률 제33호로 사회보장제도 처음 도입(근로관계 상해보상법)
- 92년 법률 제3호로 JAMSOSTEK 도입
- 93.7.1 근로자사회보장(JAMSOSTEK) 개시
  – 사용자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화 (산재, 사망, 노후, 건강)
  – 건강보험은 가족 포함
- 2004년 국가 사회보장제도 법률 제정으로 근로자 포함
  국가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토대마련
- 2010–2019년 국가사회보장 로드맵 제시

간추리면, 메가와티정부에서 토대를 만들고, 유도요노정부에서 다듬고, 현 조코위정부에서 완성을 목표로 하고있다.

(4) 사회보장제도 개편일정 및 내용

- 11년 BPJS법 제정, 법정시한 규정
- 14.1.1 JAMSOSTEK –〉BPJS Ketenagekerjaan 전환
  – 15.7.1 Pensiun 포함, 전면실시
- 14.1.1 BPJS Kesehatan 설립
  – JAMSOSTEK의 JKN 분리
- 15.1.1 근로자의 건강보장 가입완료 시한
- 19.1.1 전국민으로 건강보장 확대
- 민간, 공공부문 종사자 사회보험 단계적 통합
- BPJS 가입대상 전 근로자로 확대
  – 종전 10인 이상 업체
- 예외없는 의무가입
  – 별도 민간보험, 자체 의료시설 불인정
- 외국인력도 가입대상(6월 이상 근무자)
- 연금보장(Pensiun) 신설
- 위반사업주 제재조치 세분화 및 강화

(5) 보 험 료

- Hari Tua(JHT) : 사업주 3.7%, 근로자 2%
- Kecelakaan(JKK) : 사업주 0.24–1.74%
- Kematian(JKM) : 사업주 0.3%
- Pensiun : 사업주 2%, 근로자 1% (ceiling wage 7jt Rp)
- Kesehatan : 사업주 4%, 근로자 1% (7.1자 0.5% 인상)
- 사업주 부담 : 최대 총 11.74%

급여 (JHT) 일시불 수령 자격 (원금 + 운용수익)

– 56세에 달한 때
– 사망한 때
– 전신장애를 입은 때
– 인도네시아를 장기간 떠날 때

일부 수령 자격

– 56세에 미달하나 10년 이상 가입한 자
– 퇴직 대비용으로 적립액의 10%
– 주택 구입용으로 30% 수령 가능

JHT 주요 이슈

– 정년 전 퇴직자 일부 수령권 문제
– 구 규정은 정년 전 해고 및 퇴직자는 5년 이상 가입 및 1개월 대기 후 수령 가능
– 신규정(6.30 개정)은 정년 전 퇴직자는 56세 도달한 때 수령가능
– 10년 이상 가입자만 일부 수령권
– 대통령 지시(7.3)로 노동부에서 재검토 중
– 노조 및 국회는 퇴직 후 즉시 수령요구

급여 JKK, JKM

– JKK : 산업재해시 교통비, 급여보상금, 치료비, 장애보상금, 기능저하 보상금, 사망보상금, 재활치료비 지급
– JKM : 사망보상 일시금, 장례비, 정기보상금(24월) 지급

(6) 급 여 – Pensiun

• 급여 종류(매월수령)
– 퇴직연금(정년도래 및 최소 180개월 납부)
– 장애연금(전신장애)
– 자녀연금(본인 사망 및 배우자 부재시, 50%)
– 배우자연금(본인 사망시, 50%)
– 부모연금(본인 사망 및 배우자 자녀 부재시, 20%)
• 급여 한도 : 최소 3십만, 최대 360만 Rp
• 일시금 : 가입 15년 전 정년 도래, 가입 1년 미만 사망, 인니를 떠날 때 등

(7) 정 년

• 연금 도입하면서 정부령에 정년규정 신설
– 종전에는 장관령(No 2/1995)에 정년 55세 근거
• 정년은 56세로하되 점차 상향조정
– 2015.7.1 : 56세
– 2019.1.1 : 57세, 이후 매 3년마다 1년씩 65세에 달할 때까지 상향조정 (Pasal 15, PP No 45/2015)

(8) 개선 요청

신흥개발국의 국민복지 강화는 대세임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절하고 중요한 조치로 평가한다.

이런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BPJS 가입의무 준수가 요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BPJS문제는 현지 경영자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하는것이 권

고되며, 한국과 BPJS 시스템에 대해 협력도 권유된다.
단지, 아직도 BPJS 가입 병원의 침상수 부족등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가입자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점, 잦은 규정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혼선등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제도 시행전 자체 클리닉을 보유하여 이미 종업원들에게 만족 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있는 사업장은 예외로 인정해 주는 정책적인 유연성을 권고한다.

JHT(노후연금)은 외국인력이 단기 근무 후 귀국하는 사정상 면제를 시켜주면 좋겠다. 귀국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해도 시간적으로 청구가 힘든 애로점이 있다.

자. KITAS - IMTA 프로세스 지연

(1) 현 황

현재 신규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RPTKA(외국인력 사용계획 허가서)와 IMTA(외국인 근로 허가서)는 노동부에서 진행한 후 VISA등 체류허가는 거주지역 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과정이 전산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전산시스템 다운이나 정기보수가 있을때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일주일이나 이주일 또는 그이상 장기간 추가 진행이 멈추어 버려, KITAS – IMTA 진행중인 외국기업인 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실정이다.

(2) 관련 법령

Permenaker No. 16 Tahun 2015 =〉Permenaker No. 35 Tahun 2015

(3) 제안 사항

노동부와 이민국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이 더욱 요구되며, 양 부서의 전산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혹시 다운 되더라도 수작업으로 추가 진행할 수 있는등 Back Up 시스템을 완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부동산 / 소유권 분야

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제한

(1) 현 황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외국인 개인명의 부동산 소유법령 (PP. No. 103/2015) 의 개정 법안을 발표하고 효력을 발생시켰다.

조코위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외국인 부동산 보유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령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거주허가증 KITAS 소지자는 거주목적의 아파트와 주택에 한하여 지역 제한없이 거래 가격과 크기 제한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이 부동산은 Hak Pakai (사용권)으로 최장 80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내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KITAS 소지자 매매시 매매계약서 (AJB)작성시에는 납세증명서 NPWP가 필요하다. 또한 매매나 상속자도 KITAS 소지자이어야 한다.

KITAS 소지자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해 30년간 주택의 사용권을 갖게 되며, 이후 20년과 30년 각각 연장과 갱신을 할 수 있으나, 소유권 (Hak Milik)은 갖지 못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 (PMA)은 소유권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25년 단위로 계속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한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외국인 거주자에게 100억 루피아 (약 70만 달러) 이상 아파트의 매매허용, 50억 루피아 매매허용 정책을 내놓았다가 제한정책을 백지화 하였다.

(2) 관련 법령

대통령령 No. 55/1993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에 관한 조항법령
UU No. 20/2001 토지권에 대한 폐지조항 개인명의 부동산 소유법령 PP. No. 103/2015

(3) 제안 사항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8년경 크게 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외국인 개인명의 부동산 소유규정의 완화는 내수진작 및 외

국인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아울러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나. 토지 소유법의 단순화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토지 (소유) 법은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에 대한 대지소유권, 건축권, 사용권, 임차권 및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소유권이 그것인데, 이는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등의 국가에서는 부동산의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유매매가능권 (freehold)이고 또 하나는 임차권 (leasehold) 인데, 이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권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제한된 기간의 소유권을 인정 하고 있다.

현행 토지법 중 농지법 개정을 요하는 부분은 토지소유에 대한 유형 및 종류를 규제 하는 부분인데, 명확한 규제 및 법령이 부재 할 경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권을 조정 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상 동

(3) 개선 요청

상 동

다. 산림 Moratorium

(1) 현 황

2011년 1월부터 발효된 산림개발 억제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명하고 단호한 정책 실현이 요구된다.
중요한것은 개발택지와 산림지의 명확한 구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 정책 충돌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실행의 투명성 확보가 산림 개발 억제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다.

(2) 관련 법령

팜 농장을 위해 이탄습지 사용에 대한 규제 (Permentan No.14/Permentan / PL011/2/2009) 와 '9개 대통령 조치 (9 Presidential Orders)

(3) 개선 요청

많은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데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는만큼 팜등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데 산림 Moratorim 의 명확화가 환경보호와 개발간의 균형점을 찾을 시금석이 될 것이다.

4. 금융 분야

가. 경직된 융자 서비스

(1) 현 황

투자가들에게 있어 금융권에 자금조달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 중의 하나인데, 이는 우량 여신의 부족 때문이다. 운영자본 조달을 위한 투자여신을 위한 자본조달에 필요한 장기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인데 단기대출의 선호, 중앙은행의 여신공급 기준 강화, 은행간 합병현상, 그리고 실물경제의 높은 리스크 및 정보 비대칭성 등을 들수 있다.

(2) 관련 법령

은행 활동에 관한 법 No. 10/1998

(3) 개선 요청

한국투자가들의 초기 투자시 그리고 영업중 재원이 필요할 경우 한국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물론 인도네시아은행의 대출이자가 높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대출 기피현상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투자가들에게 더 유연한 대출 제도를 운영해 주길 요청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정부의 Economic Package 에 이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BI, 재무부, 경조부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공조가 되길 기대한다.

나. 높은 대출이자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무역 투자분야에 있어 또 하나의 장벽은 높은 대출금리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그 파급효과가 상업은행들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자금조달 비용은 여전히 높아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은행들은 유동성 경색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출 금리는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담보 대출이자의 금리 인하 결정 이전에 펀드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간접비 등의 계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자금 조달비용과 간접비, 두 비용은 어는 한 쪽이 방해받아서도 안되고 어느 한 쪽으로 부터 파생될 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은행 이윤과 위험 프리미엄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 관련 법령

은행 활동에 관한 법 No. 10/1998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에서 여신 확보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자율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었으나 기업인들은 아직도 미진하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대해 이자율을 낮출것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더라도 실제 그것이 적용되어 각 은행의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신용대출 (특히 Project Financing 의 경우) 에 한해 대출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 인프라 펀드의 미비

(1) 현 황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자금조달 수단으로 장기 대출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장기자금 운용이 가능한 펀드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산업 분포도를 보면 금융분야가 전체산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소규모 금융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산업자금 지원 형태가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사회 간접자본의 펀드 마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자금 대출 시장의 발달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은퇴펀드나 보험과 같이 장기적으로 모인 자금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물투자에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금고에 보관하여 단기 대출 자금으로 쓰거나, 혹은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비생산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면,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금융분야의 개혁이 절실하다.

(2) 관련 법령

은행 활동에 관한 법 No. 10 / 1998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ODA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ODA를 통한 인프라확장에는 어느정도 한계가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부보장 인프라 펀드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신정부의 과제인 인프라 확충을 지원 할 선결조건으로 여겨진다.

라. 인도네시아내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1) 현 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속해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는 루피아의 환율 방어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던 중,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서 국내 거래에 있어서 루피화 사용을 강제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은행거래등의 비현금 거래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조치로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카드, 전자 머니, 자금이체등 거래 전 범위로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 위반시에는 개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루피아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예외 조건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계약기간과 관련해,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외화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비현금 거래인 경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 '17/3/PBI/2015'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규정 중 관련 항목
루피아 사용의무	o 인도네시아내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루피아 사용 의무	제1부 총론 제2조, 제3조

예외	ㅇ 이하의 거래는 루피아 사용의무의 대상 예외로 함. – 국가 예산에 관련된 거래 – 외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으로의 자금 공여 – 외국 무역거래 ※ 수출입 거래 관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항구 정박료, 컨테이너 하역비, 컨테이너 임시 보관료는 루피아로 지불해야 함. ※ 서비스 진출 단계인 국경간 공급 (Cross Boarder Supply),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도 무역거래에 포함됨. – 은행으로의 외화예금 예입 – 외국과의 금융거래 ㅇ 이하의 법령에 기반한 외환거래는 루피아 사용의무의 대상 예외로 함. – 은행법, 또는 샤리아 은행법에 기반해 은행이 행하는 외환업무 –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 기준 증권 – 외국과의 금융거래	제1부 총론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루피아 수령 거절 금지	ㅇ 이하의 경우를 빼고, 루피아 수취를 거절해선 안 됨. – 위조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 2015년 7월1일 이전에 체결된 외화 기준 계약서에 기반한 경우	제4부 루피아 거절금지 제10조
상품, 서비스 가격표시	ㅇ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상품, 서비스 가격을 루피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제5부 제11조
벌칙	ㅇ 현금거래 상 루피아 사용의무 위반이나 루피아 수취를 거절하는 거래는 통화법(UU No.7/2011) 제33조에 정해진 아래의 벌칙이 적용됨. – 개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 벌금 – 법인 : 2억6700만 루피아 또는 2만 달러의 벌금 (사업면허 무효 또는 자산 압류 가능)	

	ㅇ 비 현금거래 상 루피아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하의 벌칙이 적용됨 a. 중앙은행에 의한 경고장 b. 거래금액 1%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c. 지불거래의 금지 ㅇ 상품, 서비스가격의 루피아기준 표시 의무, 또한 중앙은행에 대한 보고서, 정보, 데이터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은행에서 경고장이 발송됨. ㅇ 이 벌칙에 더해 중앙은행은 관련 감독관청에 대해 추가조치를 요청 할 수 있음	제8부 벌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통화법 UU No.7/2011
계약기간	ㅇ 2015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외화기준 계약은 비현금 거래에 한해 계약에 기재된 기한까지 유효함. 계약의 연장, 변경에는 본 중앙은행 규제가 적용됨.	제9부 이행조치 제21조
시행일자	ㅇ 본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발효함. ㅇ 비 현금 거래에 관한 루피아 사용 의무는 7월1일부터 발효	제10부 결론 제23조, 제24조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MUFJ은행 자카르타 지점
루피아 사용 의무규정은 아래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다운로드) 가능함 (인도네시아어)
– http://www.bi.go.id/id/peraturan/sistem-pembayaran/Pages/pbi_170315.aspx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루피아 사용을 강제하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를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달러거래가 이뤄지면서, 인도네시아 국내 최종 소비자, 최종 판매자가 직접 환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한다면 이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 수입상, 또는 수출상이 1차적인 환 리스크 노출자가 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수입기업이 해외에서 달러 기준으로 수입하고,
달러 기준으로 국내 판매하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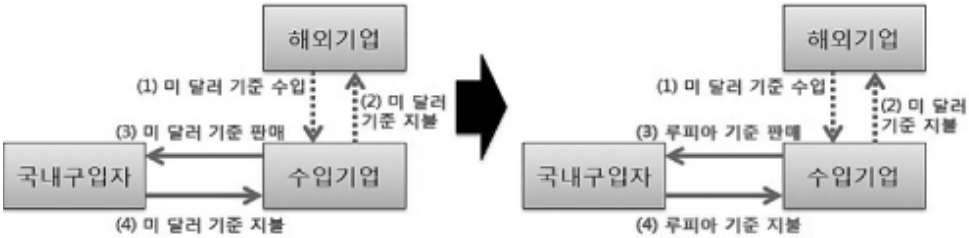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 기준으로 구입하고,
달러 기준으로 해외 수출하던 경우

자료원: MUFJ 은행

(2)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 17/3/PBI/2015

(3) 제안 사항

결국,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또한, 현지에 진출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 서비스 가격을 루피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하는점을 유의해야 하며, 기타 현지 비현금 거래 전반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지 기업들의 문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영어, 인도네시아어 사용 가능, +62–21–500–131)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인도네

시아 측파트너가 달러 기준으로 현지에서 영업을 해 왔던 경우라면, 이제부터 환 리스크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는 수출입 거래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급여 지급, 각종 비용 지불등의 루피아 사용의무 여부를 면밀히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7월 1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는 계약서 상의 기간 동안 루피아 의무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나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는 면제가 될 수 있는 점 등 관련 규정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루피아 가치 방어를 위한 고충은 이해하지만, 장기 프로젝트 및 인프라 사업, 보세지역 입주기업등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간접수출 (Indirect Export) 에 기여하는 보세지역 입주기업의 경우는 수출지향기업 (Export Oriented) 과 동등한 정책상 배려뿐 아니라, 특히 원자재를 달러로 구매하나 판매대금은 루피아로 회수함에 따라 높은 환리스크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후, 면제를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조세 분야

가. 월 선납 법인세(PPH 25) 납부의 문제

(1) 현 황

25조 선납분 법인세에 대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1/12를 납부하지만, 연도가 변경되는 시점, 전년도 조사로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부분, 법인세 신고의 지연이나, 조기신고로 인하여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분납 규정 해석의 문제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종종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선납 법인세는 자진신고 납부 대상임으로 납세자측에서 이를 간과하고 납부하지 않고, 과세 관청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이 늦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은 없으나 가산세 문제가 남아 , 납세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납 법인세가 당기 납부세액을 초과 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수검하여야 환급이 진행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측에서도 최대한 선납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선납 법인세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과세당국이 세수문제등의 이유로 해당 법인세의 감면요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3) 개선 요청

월 선납 법인세 계산에서, 당해연도 결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납 법인세를 감면 요청하고자하는 경우, 현행 3개월 기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면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해당 거부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첨부한 거부 사유서를 통보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또한 거부 사유서가 통보될 경우, 해당 통보서의 부족한 사유를 보충하여 재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 과다 납부세액 환급

(1) 현 황

법인세 기 납부세액이 차감 납부 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은 환급가능한 세액으로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도 해당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연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로 인하여 매출세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세액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환급 신청한 세액이 실제 환급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2) 개선 요청

1년 이상 걸리는 세금환급 절차는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국세의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1) 현 황

인도네시아에서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현재 자카르타 Soekarno-Hatta 국제 공항과 발리 Ngurah Rai 국제공항에서 가능하다.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점포는 전국적으로 지정된 몇 개의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최소 50만루피아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지불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Jakarta와 Bali를 통틀어 8개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세금 환급이 가능한 상점 제한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아래 8개 상점에서의 물건 및 서비스만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Jakarta : A. Pasaraya Blok M
B. Sarinah Thamrin
C. Metro Pondok Indah Mall
D. Metro Plaza Senayan
E. Keris Gallery Terminal 2D, Bandara Soekarno-Hatta

2) Bali : A. Batik Keris Discovery Shopping Mall
B. UC Silver Batubulan Gianyar
C. Mayang Bali Kuta Square Blok A No.12 Bali

(2) 관련 법령

외국인 VAT 환급에 관한 Tax Decree No. KEP-347 / PJ / 2010

(3) 개선 요청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간소화 되어, 부가가치세가 쉽게 환급되어지길 희망한다

6. 수출입 / 통관

가. 수출세 부과 및 과도한 샘플 통관비용

(1) 현 황

내수 조달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카카오사업자 연합은 수출세가 코코아 가공 산업 발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펴곤 했다.
정부는 카카오에 수출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코코아농사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세가 원재료 부족을 겪고있는 인도네시아 초콜릿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카카오 가공산업의 우선 과제는 태부족 상태인 카카오열매의 충분한 공급 확보, 필요전력 확보, 기간시설의 확충, 이자율 혜택등이며, 농민들의 카카오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부적절한 수입관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자카르타 공항에서는 명백한 상품 카탈로그,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위한 제품 샘플에도 수입세를 부과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보호주의 관행과 관료주의 행정 서비스의 관행이 입국 관문부터 나타나는 셈이다.

특히 부담이 되는것은 부가세와 사치세이며, 이는 운송비를 상품가격에 더한 금액의 50% 에 달한다. 발송된 견본은 상품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운임이 VAT (PPN)와 사치세 (PPnBM) 의 계산기준으로 산정되어 사업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2) 관련 법령

무역부 장관령 No. 44/M-DAG/PER/10/2008
무역부 장관련 No. 56/M-DAG/PER/12/2008

(3) 개선 요청

수출세와 수입관세의 전체적인 재조정이 요구된다.
카사바, 카카오, 팜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치재와 전혀 관계없는 샘플통관 규정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인증강화 요구

(1) 현 황

식품 및 식품가공품은 현재 SNI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인증기관 중 해조류 가공식품을 검사 할 수 있는 기관은 특정 4개국(싱가포르, 중국, 태국, 호주)에만 위치하고 있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시간, 비용 발생을 초래 하고 있다.

또한 통상 해조류 가공식품는 비소가 일정함량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수입통관을 위해 비소 함량을 0%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요구함으로써 수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SPPT-SNI)

(3) 개선 요청

현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업체는 최근 강화된 가공식품 인증규정으로 인해 인증을 취득하는 데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과다한 행정비용 지출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

다. 세관 행정

(1) 현 황

세관 서류심사시 관세율 확정에 문제가 많다. 위험부담이 높은 상품에 대해 관세율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것이 한 예이다.
이전에는 관세율 고지 후 수입자가 관세율을 자진 신고했지만 이런 사례가 줄고 있다.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을 받지만, 화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않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부와 세관의 규정을 더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개정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벌금은 수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무역부 장관령 No. 37/M-DAG/PER/9/2008
재무부 장관령 No. 237/PMK.011/2008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 세관은 일관된 행정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수출입

업자들은 세관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한 – 인도네시아간 수출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말 부터 세관부패 근절행사가 세관과 사측 대표간 시행되고 있는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보다 중요한 부패근절 방안은 비효율적인 법령개정이다. 예를 들어 KB지역 샘플이동, 하청시 Packing 불허등을 들수있는데 Carton Packing을 불허하면 현실적으로 하청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법령의 존속이 부패를 지속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BC23 이용한 밀수입건 관련 빈발등은 세관원의 청렴도나 소명의식에 좌우되어 기업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세관원의 자질 및 소명의식 함양도 시급하다.

라. Tanjung Priok 항구의 물류개선

(1) 현 황

Tanjung Priok 항구의 수입통관 절차는 복마전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관세라인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않는데, 이를 통관하기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 비용 청구가 늘어난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서류작성, 설문조사, 중량측정, 오퍼레이션, 터미널 치안등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불법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2) 관련 법령

TanJung Priok 항구의 수출입 업무에 관한 법 No. 17 / 2006
Tanjung Priok 항구 개발에 관한 PT. Pelindo II 정책

(3) 개선 요청

법 제도를 개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세관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관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주인의식의 미비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니 보다 강력환 감시활동과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마. 터미널 교통 정체

(1) 현 황

터미널 입출고 교통정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제한된 진입로, 낙후된 도로 상

태등으로 입출고가 어렵다. 컨테이너 화물을 트레일러에 하역하고 정문을 통과하면, 다시 세관 및 통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는 물류이동, 터미널 운영, 수출입 업계 등 전 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있다. 또한 자카르타시내의 터미널간 교통정체가 심해서 물류비 증대로 업계의 큰 부담이 되고있다.

(2) 관련 법령

TanJung Priok 항구의 수출입 업무에 관한 법 No. 17 / 2006
Tanjung Priok 항구 개발에 관한 PT. Pelindo Ⅱ 정책

(3) 개선 요청

Tanjung Priok 항구 주변의 교통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한다.

바. 선박 정박 시간 개선

(1) 현 황

수출입 업계에게 선박 정박시간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통상 Dwelling Time 1.5일을 관례로 볼 때 자카르타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개선되어 Yellow Line 경우 Dwelling Time 2–3일 걸리고 있다.

(2) 관련 법령

Tanjung Priok 항구의 수출입 업무에 관한 법 No. 17 / 2006
Tanjung Priok 항구 개발에 관한 PT. Pelindo Ⅱ 정책

(3) 개선 요청

통상 Dwelling Time 1.5일 수준 달성을 위해 선박 정비시설 확대, 통관절차의 간소화, 적재 공간의 확대 그리고 주변 도로의 추가확장을 권고한다.
Tanjung Priok 항구와 Jakarta 공항 근처의 도로 확장을 동시에 연계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사.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 일괄 적용

(1) 현 황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은 국가표준인 SNI에 합격해야 한다.
전기제품, 섬유, 식품 및 음료수, 가정용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그 대상이다.
SNI는 산업부에서 처리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

다. SNI의 목적은 유해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때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내수상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수출업계에서는 수출품이 국제 규격에 통과되었어도 인니시장에 판매되려면 국제규격에 못 미치는 인니 표준규격을 다시 획득해야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2)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표준에 관한 규정, 무역부 장관령 No. 14/M-DAG/PER/3/2007

(3) 개선 요청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들은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고 있다.
따라서 SNI 를 받으려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수출기간이 늘어나서 수출입 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ISO 인증을 받았을 경우, SNI 인증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 지정

(1) 현 황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수입품 중 5개 범주에 속하는 품목들은 Jakarta, Semarang, Medan, Surabaya, Makassar 에서만 취급하게 되어있다.
이들 5개 범주는 식음료, 섬유, 전기제품, 신발, 장난감이다.

본 정책은 중국에서 불법 수입되는 상기 품목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수 상품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 법령

무역부령 No.56 / 2008

(3) 개선 요청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업체 포함) 의 입장에서는 지정항구와 멀리있을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간혹 이러한 물류비 상승은 수출업자들에세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빠른 시일 내 지정항구 품목의 재정비를 요청한다.

자. 특별 수입 허가 쿼터제

(1) 현 황

몇몇 품목은 특별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별 수입허가는 두가지로 하나

는 생산자 및 특별수입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라이센스 (IP), 다른하나는 등록수 입업자가 취득해야하는 라이센스 (IT) 이다.
의료용품, 철강제품등은 수입업자가 IT 또는 IP를 받아야 한다. IP는 수입된 제품이 원자재로 쓰일 경우이고, IT 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직접 원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인데 이는 자격을 갖춘 등록 수입업자만 취득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무역부 장관령 No. 07/M-DAG/PER/3/2008

(3) 개선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업자 쿼터제를 실시하고있어 이러한 특정 품목에 관련된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고, 그 또한 몇몇 업자들에게 독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가 다른 능력있는 수입업자를 지정하기가 불가능하여 수출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 상황은 결국 인도네시아 소비바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수입업자를 지정하는 수입업자 쿼터제 철폐를 요청한다.

차. 긴 수출입 처리 시간

(1) 현 황

수출입 업자들은 허가 취득을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하는데, 모든 기관에서 양식을 용구한다. 중요한 사실은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이 사실상 같다는 점이다.
회사명, 주소, 제품의 종류, 수량등이 그것인데 이는 물건 수출전에 서류뭉치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업자들은 항구를 포함 많은 관계자들과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한다.
일본협력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선박이 항구 도착후 화물 출고까지 평균 5.5일이 걸리는데, 이는 일본, 미국, 독일 그리고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가장 길다.
수입의 경우 관계부처가 농림부, 무역부, 산업부, 식약청등 창구가 나뉘어 있다. 농림부는 가죽과 가축에 관한 규정, 산업부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식약청 또한 여러종류의 제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있다.

수 많은 구비서류와 절차로 인해 인도네시아에는 서류위조 (수입상품의 종류, 가격에 대한 선적서류 위조)가 성행하고 있다. 상품의 중량축소, 가격축소, 세관의 권한남용은 결과적으로 밀수와 불법환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출입 업체들은 수출 승인절차가 매우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 보관료는 물론, 업계 관계자 주차비등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수출입 관세및 행위에 관한 법 No. 17/2006

(3) 개선 요청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의 간소화 그리고 관련부서의 수출입 심사절차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양국간의 교역확대가 달성 될 것이라고 본다.

카. 보세지역 (KB) 관련 현안

(1) 현 황

인도네시아의 보세구역 제도 가운데 보세지역(KAWASAN BERIKAT)은 과거 수출을 장려하던 우리나라의 보세 공장제도와 유사한시스템으로서, 봉제, 신발, 가발, 전자, 완구, 타이어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우리기업들이 보세 지역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다.

2013년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400여개의 보세 지역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기업은 약 360여개로 전체의 25%가량을 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보세지역과 관련하여 2012년 하청규제 철회, 2013년 내수판매 제한완화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아직도 아래 기재된 세가지의 현안에 보세지역에 입주해 있는 많은 한국 봉제기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1) KB → Non KB 이동시 하청 금지조항
2) 복잡한 샘플 반출 처리 절차
3) Carton Box 사용금지

(2) 관련 법령

1) Kepmenkeu Kep No. 147/PMK.04/2011 Subkontrak BAB VII Pasal 39 & 40
2) Dirgen BC No.57/BC/2011 Subcontract BAB VI Pasal 72, 73, 74, 75 & 76

(3) 개선 요청

KB 의 발전은 노동집약적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KB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현지기업 및 한인기업을 위해 전술한 대로 KB → Non KB 이동시 하청허용, 샘플 반출시 Hanger 에서만 실시 간소화 그리고 Carton Box Packing 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 및 판매 제한

(1) 현 황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업자에게 국내제품 등록을 요구한다. 국민건강에 해로운 경우, 책임은 모두 해당 수입업자가 진다.
모든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인도네시아에 유통되기 전에 정부 신고 및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보건부, 약품은 식품의약 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많은 외국의료 및 제약업체들은 현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자사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업자의 독점적지위 인정 관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정 외국인회사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 1인 수입업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관행으로 자사 제품 시장확대에 제한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지정된 수입업자가 제대로 판매활동을 하지 못하면, 해당 외국기업은 그 업체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른 수입업자를 물색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의약품 신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관공서를 찾아가는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내 파트너를 지정하거나 의료기기 신고를 전문으로하는 컨설팅 업체가 신고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은 식약청에서의 약품 등록이 제출서류의 준비정도에 따라 3 ~ 15개월이 걸리는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다. 등록 평가는 150일까지 걸린다.

(2) 관련 법령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 규제 No. 72/1998

(3) 개선 요청

앞서 설명하였듯이, 특정 수입업체 한 곳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 할 수 있는 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케팅 잠재력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존재하는데 한 곳만이 한 제품을 수입한다는 규정은 글로벌 경쟁체제에 위배되며 결국 인도네시아 국민의 후생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 자명하다.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

발 행 인 코트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발 행 처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기 획 송요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
원 고 안광진 / 이경석 / 김재훈 / 황종원
편집, 인쇄 실크로드 인도네시아
발 행 일 2016년 2월
인 쇄 일 2016년 2월
발간자료번호 KOTRA자료 15-087
ISBN 979-11-86926-68-0(93320)
주 소 Wisma GKBI,21st Fl.Suite 2102, Jl.Jendr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 KOTRA

본 간행물은 2016년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결과물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kotra